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베트남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국가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6
3. 경제현황	7
4. 정치	10
5. 주요산업	12

II. 무역

1. 수출입	14
2. 한국과의 수출입	24
3. 수출 유망항목	28
4. 무역협정	33
5. 수입규제 및 관세	35
6. 통관 · 물류	45

III. 투자

1. 투자환경	50
2. 외국인직접투자	58
3. 한국기업 투자	60
4. 투자진출방식	68
5. 외환	73
6. 노무	75
7. 세무	81
8. 지식재산권	85
9. 청산 및 철수	88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89
2. 비즈니스 에티켓	90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91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91

5.출입국 안내	92
6.유관기관	93
7.물가정보	94
8.출장정보	95
9.생활정보	96
10.KOTRA 무역관 안내	99
11.전시회 정보	102
	103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적	331,317 km ²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수도	하노이(Hà Nội)
인구	104,799,174 명 (자료원 : CIA report / 2023년 추정치)
민족(인종)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로, 현지 정부가 인정하는 총 민족 수는 54개다. 이 중 비엣족*(또는 삨족이라고 불림)이 전체 인구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민족이다. 현지 정치 및 경제 핵심 인물 또한 대부분 삨족으로 구성된다. 삨족을 제외한 나머지 53개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된다.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 교화 및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아직 산간 지역에서만 생활하며 고유의 언어 및 문화를 유지하는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지 소수민족은 주로 북부 산간지역(50%), 서부고원 지대(15.6%), 중북부 및 중부 해안지역(14.7%)에 분포해 있다.*주: 비엣족은 Ngi Vit, 삨족은 Ngi Kinh으로 표기
언어	베트남어
종교	정부 공식 인정 종교 16개이며, 베트남 인구의 95%가 종교생활을 하고있다. 대표 종교로는 불교(10%),천주교(9%),호아하오교(2%)가 있다.
기후	<p>베트남은 대체로 열대몬순기후의 특징을 가진다. 특히 베트남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위도의 범위가 넓고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다. 베트남 북부는 4계절이 있는 몬순기후이며, 베트남 남부는 우기와 건기 2 계절만 있는 열대몬순기후를 지닌다. 베트남 남부는 3~5월, 북부는 5~7월이 가장 덥다. 한편 베트남 북부 지역의 겨울 평균 온도는 섭씨 20도 미만 수준이며, 북부 내 극소수 산간 지방에는 눈이 내리기도 한다.</p> <p>베트남 연평균 강수량은 1,400~2,400mm이며, 우기에 연간 강수량의 80~90%가 발생한다. 베트남 남부의 경우 대개 5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1월 경 우기가 끝난다. 반면 베트남 북부의 홍강 삼각주 지역은 7~8월이 장마 절정기간이다.</p> <p>열대국가인 베트남의 일조 시간은 연 1,400~2,60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며, 태양복사량 역시 120~130kcal/cm²/년으로 높다. 특히 베트남 남부와 중부는 연 일조 시간이 2,000~2,600시간으로 장마 기간을 포함해 거의 일년 내내 햇빛이 풍부하다. 반면 베트남 북부의 연 일조 시간은 1,500~1,70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베트남의 연간 평균 습도는 약 80%로 매우 높다.</p> <p>한편 베트남 총 표면면적의 20%가 해안가 저지대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하며, 폭풍·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도 잦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풍과 홍수로 인한 베트남의 피해액은 연간 8억 5,200만 달러로 추정되며, 강가 및 해안가 홍수로 농수산업, 관광업, 공업 분야에 피해가 지속돼 매년 32만여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료: 세계은행 2020년 10월 발간 보고서(Resilient Shores))</p>
국가원수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정치체제 하에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2011년, 2016년에 이어 3연임에 성공하여 2021년 1월 31일 재선출되었다. 베트남 핵심 지도부는 4인 체제가 기본이며 권력 서열 1위는 당서기장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2위는 국가주석 응우옌 쉘옌 푸(Nguyen Xuan Phuc), 3위는 총리 팜 민 쩌(Pham Minh Chinh), 4위는 국회의장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으로 해당지도부의 취임기간은 2026년까지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부하 공무원들의 부패, 비리, 규정위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서열 2위의 응우옌 쉘옌 푸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부패 척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 보 반 트엉(Vo Van Thuong)이 선출되어 임명되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7.02	2.91	2.58	8.02	
명목GDP (십억\$)	331.8	346.3	369.7	406.5	
1인당 GDP (PPP, \$)	10,177	10,351	10,516	11,250	
1인당 명목 GDP (\$)	3,439	3,549	3,753	4,087	
정부부채 (% of GDP)	40.8	41.3	39.3	37.1	
물가상승률 (%)	2.8	3.2	1.8	3.1	
실업률 (%)	2.2	2.5	3.2	2.3	
수출액 (백만\$)	264,289.37	282,655	336,310	371,304	
수입액 (백만\$)	253,071	262,701	332,230	358,902	
무역수지 (백만\$)	11,218.37	19,954	4,080	12,402	-
외환 보유고 (백만\$)	78,335	81,120	109,900	92,101	
이자율 (%)	6	4	4	6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23,050.24	23,208.37	23.16	23,271.21	

<자료원 : 베트남중앙은행(SBV), 베트남통계청(GSO), IMF, World Bank>

나. 경제 동향

베트남은 2022년 8.02%의 경제 성장을 하며, 12년 만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러-우 사태의 장기화와 세계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압박 등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며, 코로나 19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산 재개를 실시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예측한 전망치인 6.5%를 훨씬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것이다.

2022년 3월 베트남은 코로나로 봉쇄했던 대내외 시장을 개방했다. 이후 1~3분 서비스업 10.57%, 공업 및 건설업 9.44% 성장률을 기

록하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오랜 코로나 기간의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부가세 완화정책(10%→8%) 실시, RCEP 발효('22년 1월)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도 물가 향방에 관심을 쏟고 있다. 베트남의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1년 대비 3.15% 증가하여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베트남 통계청은 ▲원유 수급 불안정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상승 ▲쌀 수출 가격에 따른 내수 쌀 가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 자재 가격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가격 감소 ▲임대주택 가격 하락 ▲휴대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우편 및 통신료 감소 ▲베트남 정부의 선제적 대처로 인플레이션을 일반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으로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인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 무역 부문이 타격을 받으며, 베트남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3.72%에 그쳤다. 하지만 해외 기관들은 베트남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FDI, 무역 부문이 하반기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IMF는 2023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되어 베트남의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베트남 통계청은 상반기에 유입된 FDI 총액은 전년대비 4.3% 감소했음에도 신규 등록자본, 자본 출자 및 주식거래량 등의 항목에서 증가율을 보여 투자구조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하반기 베트남 경제 동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이 완화되어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인 제조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은행 및 언론 기관에서는 베트남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5~5.1%로 2023년 1, 2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해외 경제기구의 베트남 2023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은 4.9~5.8%로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베트남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3.32%, 2분기 4.14%에 그쳐 2023년 연간 성장률에 반영된 것에 따른다.

4분기 베트남의 무역 부문의 회복세는 생산,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리외교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무역, 생산,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이 모두 회복세로 베트남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침체에 따라 GDP 성장률을 6.5% → 5%로 하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분기 경제 부양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다. 경제 전망

베트남 정부에서 연초 설정한 2023년 경제성장 목표는 6.5%이며, 주요 투자은행(IB)도 대부분 6~7%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 그러나 제조업 및 건설 분야에서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가 이어지면서 높은 원자재 비용으로 인한 핵심 산업 생산 감소 및 수주 감소가 이어져, 2023년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1분기 대부분의 투자 은행은 2023년 베트남의 성장률 예측치를 0.1%~0.8% 하향 조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의 흐름은 베트남 무역과 투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202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791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은 14.7% 감소한 751억 달러이다. 2023년 1분기(1~3월)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액은 코로나 시기 때보다 더욱 낮은 약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8% 큰 폭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19년 1분기 투자유치액의 약 50% 수준에 불과하며, 산업 분야로는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 투자가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ADB는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6.5%로 전망하면서 높은 성장률 달성을 위한 돌파구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베트남이 올해 계획에 따라 약 300억 달러(약 39조4350억 원)의 공공 투자 자본을 지출한다면 GDP 성장률에 약 1%를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철저한 인플레이션 통제에서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이다. 마지막은 세계 2위 경제 강국인 중국의 개방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 건설, 서비스 등 중국 내 대부분의 분야들이 잘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회복에도 좋은 동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으로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인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 무역 부문이 타격을 받으며, 베트남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3.72%에 그쳤다. 하지만 해외 기관들은 베트남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FDI, 무역 부문이 하반기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IMF는 2023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되어 베트남의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베트남 통계청은 상반기에 유입된 FDI 총액은 전년대비 4.3% 감소했음에도 신규 등록자본, 자본 출자 및 주식거래량 등의 항목에서 증가율을 보여 투자구조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하반기 베트남 경제 동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

베트남 성장의 주요 동력인 무역,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분의 회복세를 보이자 생산, 고용 부분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역 부분의 회복세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해 생산 부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침체 회복 속도가 늦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정식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공산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하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 중이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이며, 국회는 국가 최고권력기관, 국가 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가 최고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나. 최신동향

베트남 정부는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머이(刷新)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한 국민 화합과 경제개혁을 가속하는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해소하려 노력 중이다.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및 소수민족 등 경제발전의 소외계층을 위해 농촌 개발, 빈곤 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공산당과 정부는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반부패 이니셔티브에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2021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열린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선출되었다. 베트남 핵심지도부는 4인체제가 기본으로, 당서기장(서열 1위)에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국가주석(서열 2위)에 응우옌 쑤언 폭(NGUYEN XUAN PHUC), 총리(서열 3위) 팜 민 쯔(NGUYEN MINH CHINH), 국회의장(서열 4위) 브영 딘 후에(VUONG DINH HUE)가 지명되었고, 해당 지도부의 취임 기간은 2026년 까지로 예정되었다.

2023년 3월 부하 공무원들의 부패, 비리, 규정 위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응우옌 쑤언 폭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했고, 후임으로는 부패 척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 보 반 트영(Vo Van Thuong)이 선출되어 임명되었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1) 대외관계

베트남은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개방적인 외교기조를 유지하며, 교역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한다.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과 '개방, 다양화, 다변화'라는 기본 원칙 하에 중국, 북한은 물론 미국 EU 등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한다. 또 국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일반원칙을 존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서방국가들의 對러시아 비판·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아울러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 가입, 1998년 APEC 가입, 2007년 WTO 가입 이후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맞추어 FTA 체결도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ASEAN, 일본, 칠레, 한국, VCU, TPP, EU, EFTA, RCEP, 쿠바, 영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한 상태다.

베트남은 2023년 6월 27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23년 9월 10일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러시아와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하는 등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른바 '대나무 외교'로 불리는 해당 외교 전략을 활용해 베트남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 사회적 특징

베트남인은 근면, 성실, 인내를 갖춘 민족으로서 약 3천년의 역사 동안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국 역사에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질 높은 노동력으로 평가된다.

6성조를 가진 베트남어가 공용어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표기에 사용했으나, 8세기경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쯔놈(Chu Nom)을 만들어 이용한다. 18세기 말경 예수회 사제들이 쯔놈을 알파벳으로 옮겨 쓰면서 오늘날의 베트남 문자가 일반화되었다. 남북이 1,700km에 달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북부-중부-남부의 지방 간 특성이 뚜렷한 편이며, 지역적인 사투리도 심한 편이다.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미신적 요소가 상존한다.

전국에 850개의 지면 신문 및 언론 편집사가 존재하며, 국영 베트남 TV 외 각 성별로 자체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현지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인·허가 및 검열을 한다.

라. 정책 · 법령

베트남은 정치적·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공산당 지배의 정치 체제 유지 및 이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1986년부터 추진해 온 도이머이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 발전을 기본 정책으로 지속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법률·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법치국가’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률 정비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관리하의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의 틀에서 경제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조치를 지속하여 도입하고 있다. 제도·정부 구조 혁신, 공직자의 자질 개선, 재정 구조 개혁 등 정부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교 정책은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을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 기조 하에서 교역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인 경제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0년 단위로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을 발표하며, 2021년 1월 발표한 ‘사회경제개발전략 비전 2021-2030’에서 베트남 정부가 2030년 까지 추진할 국가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동 전략은 2011-2020년 까지의 성과로 ▲국력 신장 ▲경제 자율성 개선 ▲거시경제 안정 ▲민간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으며, 다만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 ▲GDP 성장률 정체 ▲양극화 심화 ▲고령화 가속화 ▲자연재해·감염병·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 요소의 불확실성 심화 등을 대내외적 취약성으로 지적하고, 경제 발전 관련 사고방식의 전환과 제도 개혁,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및 내수시장 발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1차산업이 발달했으나 제조·서비스 산업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베트남 통계청(GSO) 발표에 따르면 2021년 GDP에서 1차산업(농업·임업·수산업)의 비중이 15.7%, 2차산업(제조·건설업)이 55.6%, 3차산업(서비스업)이 28.7%를, 세금 및 기타수입은 9.8%를 차지했다.

1차산업은 메콩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인 벼 생산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우류 등 해산물도 풍부하여 베트남의 대기업도 대부분 1차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공하여 내수 및 해외 시장에 유통 및 수출하는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2차산업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루어져왔는데, 초반에는 섬유 의복 가공 중심의 경공업에서 전기전자 조립산업 중심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3차산업 비중을 높이려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금융, 물류·운송, 정보통신, 과학기술, 교육·훈련, 건강·보건, 관광산업 등 잠재력이 큰 산업 개발에 집중해 서비스산업을 재구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2015년 GDP의 6.3%에서 2019년 9.2%로 꾸준히 규모를 늘려온 관광 산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으면서 베트남 정부는 비자정책을 완화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1) 섬유·의류 산업

베트남 섬유·의류 업체의 85%는 봉제 가공업체로 이중 CMT 방식이 60%, OEM 방식이 35%, ODM 방식이 5%를 차지하고 있다. 메콩-중국 전략연구 프로그램(MCSS), 베트남 국립농업아카데미(VNUA) 및 ActionAid(AAV)가 발표한 2020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섬유관련 기업 수는 2011년 6,898개 대비 2018년 1만 1,95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원단 기업은 37%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FDI 기업은 전체 기업의 11.7%에 불과했지만 자본 규모는 업계 전체의 63%, 수출 규모는 50%를 차지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원단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낮아 해외 수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수용 의류 생산에 주로 쓰인다. 베트남 생산 원단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5년 해외 원단 사용 비율은 70%였으나 2011년 55%로 감소했다가 2019년에는 약 70%로 다시 증가했다.

섬유, 의류, 가죽 및 신발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산업이며 세계시장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 19의 회복세에 대한 반동으로 '베트남, 대미 섬유 수출 10년만에 최고치 기록' 등 긍정적인 기사들이 이어졌지만,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선진국 오더 감소로 인한 물류난 및 재고율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전자 산업

일본의 캐논, 파나소닉과 한국의 LG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내수용 제품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삼성전자의 베트남(박닌성) 투자로 인해 본격적인 베트남 전자 산업의 도약을 이루었다. 삼성전자에 이어 교세라('11년), 노키아('12년), LG전자('13~'16년), 후지제록스('13년), 인텔('15년) 등 전자제품 및 반도체 업체가 순차적으로 진출하였다. 베트남 FDI산업에 초기에 투자진출한 기업 중 삼성전자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는 전무후무하다. 2008년 북부 박닌성에 6억7000만 달러 규모의 무선통신기기 제조공장 설립을 필두로, 2020년 기준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약 175억 달러이며 베트남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의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공장은 주요 공단에 집중되어 분포해 있다. 남부의 주요 산업 단지로는 호찌민시에 위치한 하이테크 산업 단지인 Saigon High Tech Park(SHTP)가 있으며, 초기 진출기업인 인텔과 삼성 등이 SHTP에 자리를 잡았으며, 뒤를 이어 Nidec, Jabil과 같은 회사가 SHTP단지에 입주하였다. 베트남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최대 투자지역은 하노이를 둘러싸고 있는 북부지방이다. 하노이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박닌은 삼성의 최초 진출 지역이며, 이후 폭스콘과 캐논을 유치했다.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도시인 하이퐁은 주요 공단까지 도로교통이 편리하며, 심해항과 인접하고, 중국 선전의 공단까지 트럭으로 12시간만에 운송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하이퐁에 진출한 주요 기업으로는 LG, 페가트론, ASE 홀딩스의 자회사인 USI 등이 있다.

3) 소매·유통 산업

베트남 공상부(MoIT)는 2022년 142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2025년 3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관광부문의 회복으로 연평균성장률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3년 후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베트남 GDP의 59%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현재 결제 편의성을 증대시킬 소매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면서 소매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베트남 소매 시장의 규모는 21% 성장하며 베트남 당국의 기존 성장 목표치인 8%를 초과 달성했다. 2022년 베트남 전체 소매업체 중 53.8%가 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거나 증가하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베트남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운송 및 숙박을 포함한 관광부문의 회복에 기인한다.

2023년 거대 유통기업들의 베트남 소매 시장 확장 계획을 주목해야하는데, 태국의 Central Retail은 향후 5년 동안 20조 VND(약 8억 5천만 USD)을 베트남에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으며, 베트남 내 관할 지역을 기존 40개 지역에서 55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더불어 일본 Aeon그룹은 하노이에 새로운 메가몰(megamall)을 건설할 예정이다.

4) 철강 산업

베트남의 철강 생산 능력은 현재 국내 총 수요를 초과하지만 일부 철강 품목에 생산이 집중돼 있어 공급의 불균형을 이룬다. 주로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 봉형(봉강), 아연 도금 강판(냉연, 열연, 도금/코팅 강판) 및 강관과 같은 품목은 재고가 많아 일반 건축용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는 충족하지만 제조업 및 지원 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고급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VS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철강산업의 총 설계 생산 능력은 연간 3500만 톤 이상이고, 철강 공장의 실제 연간 생산량은 2900만 톤 이상으로 최대 생산 능력의 약 80%에 불과하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철강 산업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철강 생산은 전년 대비 11.9% 감소, 베트남 국내 철강 소비도 7.2% 감소했다.

5) 제약 산업

시장 조사기관 IBM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의 제약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로 2015년 보다 약 2배 성장했으며, 베트남 제약시장은 향후에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까지 161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Statista에 의하면 베트남 제약시장에서 현지 생산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수입의약품 비율은 65%로, 수입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유통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전문 의약품 병원 영업(ETC)은 전체 점유율의 약 73%를 차지하고 일반 의약품 약국 영업(OTC)은 약 27%를 차지한다. 일반의약품 영업 이익 대비 전문 의약품 영업 이익 비율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인구 증대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 인구가 증가하고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제품이다. 베트남에서는 애플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익숙한 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영양제와 건강보조 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2022년도 베트남 제조업의 정상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주요국 경제의 본격 재개로 글로벌 소비수요가 회복되었다. 베트남의 제조업은 핵심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베트남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교역액을 기록하였다.

2022년도 베트남 총교역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30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71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589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흑자액은 124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022년 4/4분기부터 세계 경기둔화로 인한 대외 소비수요 감소로 글로벌 오더도 급감하는 등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는 2023년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FDI) 기업의 무역 비중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 2022년도 총교역액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5068억3000만 달러(총교역액의 69.4% 비중)를 기록하였다. 그 중 FDI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736억3000만 달러(총수출액의 73.7%)를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2332억 달러(총수입액의 65%)를 기록하여, 404억2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베트남 교역의 무역흑자를 견인하였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22년도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은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액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9.5%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수입은 석유제품 등 에너지 수입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32.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요 교역국 중 큰 폭으로 수출입의 증감이 발생한 국가는 일본과 호주다. 일본으로는 베트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CPTPP의 효과로 수산물과 섬유 의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호주로부터의 베트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면, 석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1,597,003,898
2	중화인민공화국	41,661,530,550
3	일본	20,684,659,800
4	대한민국	19,808,861,976
5	홍콩	7,380,129,313
6	네덜란드	7,082,584,132
7	인도	6,899,855,433

8	독일	6,646,742,805
9	영국	5,846,664,242
10	타이	5,118,916,14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7,310,407,931
2	중화인민공화국	49,129,440,573
3	일본	19,474,155,699
4	대한민국	19,193,911,184
5	홍콩	13,041,487,052
6	네덜란드	7,250,543,060
7	독일	6,811,855,938
8	인도	5,341,076,960
9	영국	5,040,918,337
10	타이	4,967,172,03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07,643,040,933
2	중국	84,405,272,373
3	일본	22,689,172,462
4	홍콩	15,063,440,793
5	독일	12,189,504,458
6	캐나다	7,836,464,294
7	멕시코	7,517,674,574
8	아랍에미리트	7,390,827,977
9	네덜란드	7,251,214,207
10	인도	6,765,846,425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12,265,359,714
2	EU	43,299,547,830
3	일본	23,843,840,087
4	홍콩	14,028,635,334
5	독일	12,903,466,835
6	캐나다	7,915,813,681
7	영국	7,497,802,661
8	네덜란드	6,296,917,234
9	호주	5,560,287,911
10	폴란드	3,575,392,559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5,749,513,015
2	대한민국	47,043,382,837
3	일본	19,710,410,168
4	Other Asia, nes	15,346,218,379
5	미국	14,554,518,807
6	타이	11,909,998,667
7	말레이시아	7,494,233,136
8	인도네시아	5,847,752,865
9	독일	5,461,665,762
10	싱가포르	5,413,445,926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4,393,745,722

2	대한민국	46,919,199,488
3	일본	20,712,612,326
4	Other Asia, nes	16,813,779,777
5	미국	13,904,208,159
6	타이	11,086,164,155
7	말레이시아	6,707,133,430
8	인도네시아	5,512,945,399
9	오스트레일리아	4,774,552,356
10	싱가포르	4,652,928,42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36,285,987,163
2	일본	17,849,977,223
3	홍콩	13,227,753,410
4	미국	10,765,397,265
5	말레이시아	10,660,153,582
6	호주	6,887,863,661
7	인도	6,563,524,928
8	인도네시아	6,319,859,650
9	독일	4,364,858,410
10	아르헨티나	3,140,608,891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일본	17,001,870,120
2	홍콩	13,097,809,426
3	EU	12,172,055,290
4	미국	9,674,188,415
5	호주	9,322,537,393

6	브라질	3,336,592,734
7	독일	3,295,139,306
8	네덜란드	866,965,479
9	영국	833,110,566
10	캐나다	649,111,40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1) 베트남의 수입

환율 상승과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해 글로벌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전자기기 및 의류 신발 등 베트남의 수요 생산 및 수출 품목에 대한 원부자재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컴퓨터·전자기기 및 부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8.4% 증가하여 총수입액의 22.8%를 차지하여 비중을 높였으며,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각각 수입액이 118.5%, 19.6% 씩 급등하였다. 그러나 2022년 4/4분기부터의 선진국 생산 오더 감소로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 휴대전화 및 부품, 기계 장비 및 부품 등 FDI 기업의 생산 원부재자로 사용되는 주요 수입품목에서도 두드러지며, 이는 2023년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2) 베트남의 수출

코로나 19의 진정세 이후 생산 재개로 베트남의 8대 주요 수출품목(휴대전화 및 부품,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 기계장비 및 부품, 섬유 의류, 신발, 목재 및 목제품, 기타 운송수단 및 부품, 수산물)은 모두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 하였다. 특히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신발, 섬유 및 의류의 수출액은 각각 34.6%, 14.7% 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4/4분기부터의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 감소는 휴대전화 및 부품,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 섬유 의류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4,151,181,689
2	851770	부분품	17,521,635,638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0,744,366,904
4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5,414,124,090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472,088,830
6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426,353,623
7	640419	기타	3,836,798,386
8	640399	기타	3,670,516,461
9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3,510,388,890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213,020,36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1,090,718,186
2	851770	부분품	20,869,525,287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3,020,644,729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9,643,298,245
5	852990	기타	5,170,204,711
6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4,557,588,660
7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4,462,771,543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213,643,434
9	640419	기타	3,863,755,162
10	640399	기타	3,386,865,725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4,267,694,147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1,353,244,425
3	851770	부분품	26,887,411,313
4	852990	기타	13,510,418,576
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3,236,993,011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603,627,953
7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5,540,572,491
8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4,666,946,046
9	94016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300,296,205
10	640419	기타	4,143,785,23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9,087,138,739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0,981,702,295
3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8,820,874,361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440,393,575
5	640399	기타	5,702,150,226
6	640419	기타	5,140,325,438
7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4,621,845,251
8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4,306,256,942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134,475,948

10	852990	기타	4,127,711,620
----	--------	----	---------------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18,170,635,931
2	851770	부분품	13,267,262,900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1,048,238,316
4	271019	기타	5,000,731,553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918,398,096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600,565,508
7	853400	인쇄회로	3,554,737,980
8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3,095,833,909
9	852990	기타	2,935,090,921
10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479,194,07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20,975,940,992
2	851770	부분품	16,072,142,916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4,383,417,818
4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5,073,608,567
5	852990	기타	4,545,231,982
6	853400	인쇄회로	4,106,675,976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845,033,165
8	271019	기타	3,069,401,698

9	100590	기타	2,382,113,276
10	392690	기타	2,359,875,39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4,368,255,159
2	851770	부분품	9,122,945,333
3	854232	메모리	5,380,573,877
4	854239	기타	4,432,745,299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209,053,619
6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2,872,306,653
7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680,392,304
8	901380	그 밖의 기기	2,637,803,662
9	100590	기타	2,259,552,596
10	852990	기타	2,240,319,04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112	유연탄	4,445,600,616
2	854239	기타	4,409,825,686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228,763,375
4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817,568,189
5	300490	기타	2,437,307,511
6	100199	기타	1,258,745,061
7	720449	기타	1,186,077,166
8	120190	기타	1,109,837,986
9	844399	기타	945,703,467

10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67,212,558
----	--------	---------------------------------------------------------------------	-------------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2022년 베트남은 기존 한국의 4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에서 일본을 제치고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의 1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부상할 만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대 ASEAN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이며, 그 외 투자, 인적교류,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제 1의 협력국가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은 2022년 한국의 3위 교역국(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3위 수출국(중국, 미국 베트남 순), 7위 수입국(중국, 미국, 일본, 호주, 사우디, 대만, 베트남 순), 1위 무역 흑자국이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22년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국 사상 최대 교역액을 경신하였다. 202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으로 두 국가는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교역액이 약 178배가 성장한 것이다. 수출액은 전년대비 7.5% 성장하여 610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대비 11.5% 증가하여 267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은 34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베트남으로부터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2년 4/4분기부터의 글로벌 오더감소로 인한 베트남 교역액 감소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도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2023년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48,178	21,072	27,106
2020	48,511	20,579	27,932
2021	56,729	23,966	32,763
2022	60,964	26,725	34,239
2023	43,939	21,836	22,10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1) 품목별 수출동향

2022년도 한국의 대 베트남 상위 수출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은 수출 증가세를, 무선 통신기기는 수출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직접회로반도체는 2022년 3/4분기까지 높은 전방산업의 수요로 인해 전년대비 21%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경유 등의 석유제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과 베트남 정유시설의 생산문제가 겹치면서 전년대비 222.3% 수출액이 급증하였다. 자동차 부품은 베트남에서 CKD 조립 생산을 하는 현대 기아차의 베트남 내수 판매량이 늘어 전년대비 26%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무선 통신기기는 전년대비 29% 수출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 공장 감소와 벨류체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삼성, LG 등의 진출 기업 향 수출이 대부분인 만큼, 2022년 4/4분기부터의 글로벌 오더감소로 인해 베트남 교역액 감소에 따라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또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2023년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2) 품목별 수입동향

2022년도 한국의 대 베트남 상위 수입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상위 4개 품목(MTI 3단위 기준)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컴퓨터, 신변잡화로 이 4개 품목이 한국의 베트남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일 정도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편중도가 심하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61	평판디스플레이	12,511	774	11,737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15,467	598	14,869
3	1332	경유	2,821	0	2,821
4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2,196	2,942	-747
5	2140	합성수지	2,581	29	2,551
6	8343	인쇄회로	1,519	476	1,043
7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806	226	580
8	7420	자동차부품	1,168	336	832
9	8313	개별소자반도체	726	188	537
10	4360	편직물	812	23	78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61	평판디스플레이	10,161	579	9,582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9,350	1,490	7,860
3	1332	경유	2,572	0	2,572
4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1,703	2,333	-630
5	2140	합성수지	1,658	33	1,625
6	8343	인쇄회로	991	314	677
7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649	182	467
8	7420	자동차부품	636	337	299

9	8313	개별소자반도체	625	128	497
10	4360	편직물	558	11	54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2,196	2,942	-747
2	4412	직물제의류	321	2,364	-2,043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15,467	598	14,869
4	5212	신발	77	1,241	-1,165
5	4411	편직제의류	48	1,277	-1,230
6	8131	컴퓨터	25	1,102	-1,077
7	8421	제어용케이블	141	653	-513
8	8121	무선전화기	27	1,991	-1,965
9	8361	평판디스플레이	12,511	774	11,737
10	8127	무선교환기및중계기	63	645	-58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1,703	2,333	-630
2	4412	직물제의류	225	1,977	-1,752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9,350	1,490	7,860
4	5212	신발	55	1,022	-967
5	4411	편직제의류	43	1,010	-967
6	8131	컴퓨터	30	967	-937
7	8421	제어용케이블	154	789	-635
8	8121	무선전화기	18	688	-670
9	8361	평판디스플레이	10,161	579	9,582
10	8127	무선교환기및중계기	51	469	-41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의료기기(진단용 의료기기 등)

HS CODE	382200,(체외진단의료기기), 901812(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	수입액 (US\$백만)	1,150
수입관세율(%)	0~8	대한 수입액 (US\$백만)	97
선정사유	코로나19 이후 부쩍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베트남의 인구 구조, 소득수준, 베트남 정부의 의지 등 모든 요소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의료기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에 이점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변화하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전시회 등을 활용하여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시장동향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은 2020~2025년 연평균 1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25억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는 이유로는 최근 베트남 정부의 신규 의료기기 법령 제정, 의료 부문 적극적 투자 유치 및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 증대 등의 활동을 통해 보건 의료부문을 지원하고 있고 관세율,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의료기기 수입을 장려하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들 수 있다. 또한, 약 1억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의 많은 인구와 고령화, 중산층의 증가로 고품질의 전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높은 만성질환자의 비율, 도시화율 증가 등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할 요인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동향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베트남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베트남 내 의료기기 생산 시설의 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베트남의 의료기기 주요 수입대상국은 2022년 기준 중국 9,246만 달러, 일본 7,734만 달러, 미국 7,023만 달러, 독일 6,237만 달러의 순이며 이 중 한국은 독일에 이어 5번째 수입대상국으로서 수입액 규모는 5,001만 달러로 전체 수입 비율 중 약 8.82%를 차지했다.		
진출방안	<p>1)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와 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 조사, 제품 등록, 유통, 마케팅 등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현지 파트너는 정부 기관, 병원, 유통 업체, 컨설팅 회사 등이 될 수 있다.</p> <p>2)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으로 구분된다. 저가 제품은 주로 중국산이며, 고가 제품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산이다.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 하고, 현지 소비자의 니즈와 기대에 맞게 맞춤화할 필요가 있다.</p> <p>3)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아직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p>		

○ 애완동물용 사료 및 용품

HS CODE	230910	수입액 (US\$백만)	330.8
수입관세율(%)	0~7	대한 수입액 (US\$백만)	11.6
선정사유	<p>최근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 19라는 병리적 사회현상으로 인해 '반려동물', 즉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전환에 따라 기르는 동물을 하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대우하는 이른바 '펫팸족*'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p> <p>*펫팸족: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 반려견을 단순한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을 뜻함</p>		

<p>시장동향</p>	<p>베트남은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수요와 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이처럼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펫팸'(Pet+Family), '펫코노미'(Pet+Economy),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과 같은 다양한 동물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다. 이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 용품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p> <p>베트남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들도 매년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Euroonitor)에 따르면 2018~2022년 베트남의 반려동물 용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1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약 1,567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2,8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p>
<p>경쟁동향</p>	<p>2022년 기준 태국 펫푸드 제조업체 퍼펙트 컴패니언(Perfect Companion Co.,Ltd)은 미오(Me-O), 스마트하트(SmartHeart), 클래식펫츠(Classic Pets-CP) 등의 중저가 반려견·반려묘용 건식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어서 위스카스(Whiskas), 로얄캐닌(Royal Canin), 페디그리(Pedigree) 등의 펫푸드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1위 기업 미국의 마즈(Mars Inc.)가 뒤를 이었다.</p>
<p>진출방안</p>	<p>베트남의 주요 개·고양이 애완용 사료 유통구조는 크게 매장판매(89.5%), 비매장 판매(4.2%), 비소매 채널(6.3%)로 구분된다. 2021년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개·고양이 애완용 사료의 주요 유통구조는 펫샵으로 전체 유통 채널의 약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9.5%), 동물병원(6.3%), 이커머스(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소비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티키(Tiki) 등의 이커머스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다.</p> <p>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원재료와 구성 성분, 첨가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인 1인당 월평균소득 상승에 현지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반려동물 제품 선호도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 사료를 넘어 영양을 보충하고 다양한 원료로 생산한 사료인 위스카스(Whiskas), 미오(Me-O) 사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p> <p>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캣츠랑(Catsrang), 캣츠아이즈(Cat's eyes)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품질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p> <p>베트남에 진출하고자하는 우리기업들은 제품 홍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SNS 및 온라인 프로모션 전략을 필수 구축해야 한다. 또한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위해 눈에 띄는 패키징과 더불어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p>

◦ 점안액 및 아이케어 제품

<p>HS CODE</p>	<p>300490</p>	<p>수입액 (US\$백만)</p>	<p>1,139</p>
<p>수입관세율(%)</p>	<p>0</p>	<p>대한 수입액 (US\$백만)</p>	<p>78</p>
<p>선정사유</p>	<p>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에 제약이 생기며 재택근무 및 사무실 근무를 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안구 건조증 및 눈의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해 윤활용 혹은 피로 회복용 점안액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점안액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다소 회복되었으며, 지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p> <p>2022년 기준 베트남 인구의 94%가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최대 7시간에 달한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탭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인이 안구건조증 및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의 공해가 증가하면서 알레르기 아이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공장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하면서 알레르기용 점안액의 수요 역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p>		

<p>시장동향</p>	<p>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점안액 포함 아이케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6%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1.44%로, 베트남 아이케어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 유로모니터는 베트남 아이케어 시장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74%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p> <p>베트남 아이케어 시장은 비교적 단순하게 ‘일반 점안액 및 아이케어 제품’ 및 ‘알레르기용 점안액’으로 양분화할 수 있다. 2023년 베트남의 아이케어 시장 매출의 약 96%는 일반 점안액 및 아이케어 제품 판매로부터 발생하였다. 이에 베트남인은 특수 목적용 눈 관리 제품보다 일반적인 아이케어 제품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p>
<p>경쟁동향</p>	<p>2022년 인도는 베트남 HS 코드 3004.90품목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베트남은 인도로부터 2억 3,320만 달러를 수입했다. 수입국 2위, 3위는 독일과 프랑스로, 2022년 베트남의 대독일, 대프랑스의 수입 비중은 각 전체의 11.3%, 11.2%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한국은 점유율 11.28%의 점유율을 보이며 프랑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p> <p>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에서 자주 언급되는 점안액 브랜드는 상떼(Sante), 나트리클로리드(Natri Clorid), 아이미루(Eyemiru), 아이라이트(eyelight), 리프레쉬티어스(Refresh Tears), 오슬라(Osla), 시스테인울트라(Systane Ultra) 순이었다. 온라인 리뷰 시장 점유율은 총 18만7,673개의 리뷰 및 답글을 보유한 로토-멘 소래담이 역시 점유율 53.03%로 1위를 차지했다.</p>
<p>진출방안</p>	<p>베트남의 점안액 유통방식은 크게 베트남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한 상품을 유통업체가 유통하는 것과 수입 의약품이 수입상이 유통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에서 일반의약품을 유통할 때의 핵심은 강력한 유통 시스템을 가진 현지 수입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제약사들 역시 직접 유통이 불가하므로 현지 수입 협력사를 통하여 자사의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대형 제약사들은 베트남 내에 강한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제약사 또는 약품 수입업자를 수입 협력사로 삼아 국내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광고만 가능하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을 고려하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제조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유통 및 광고 관련 규제를 유념해야 한다.</p> <p>현지의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반의약품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현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며, 만약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여의찮다면 유능한 현지 수입업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소비자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트렌디한 마케팅을 하며 공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회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 및 이벤트 포스팅을 매주 2-3건 이상 꾸준히 올리며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연예인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이처럼 해외 일반의약품 생산자가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경험이 많고 유통 채널이 넓은 현지 수입·유통사와 협력하는 것이다. 대형 현지 제약 수입업자를 활용하면 마케팅 관련 어려움도 극복하기 수월하다. 또한 기회가 될 경우 다음 현지 제약 분야 관련 전시회에 참여 및 참관하면 최신 동향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p>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콜드체인 운송 서비스

<p>선정사유</p>	<p>베트남 콜드체인 시장은 수산물 수출, 생식 수입, 현대 무역 소매 및 식품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유통에 대한 활성화에 의해 시장 성장이 주도되고 있다. 베트남의 콜드체인 물류 시장은 2022년 기준 2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최근 베트남 국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베트남의 콜드체인 총 설계 용량은 170만 파렛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3~2026년까지 2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완료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 규모가 약 5억 5,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	--------------------------------------------------------------------------------------------------------------------------------------------------------------------------------------------------------------------------------------------------------------------------------------------------------------------------------

<p>시장동향</p>	<p>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높은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MARD)에 따르면 베트남은 약 70만 개의 파렛트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농수산물 보관창고 48개 및 수천 개의 중소형 냉장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합 약 200만 톤 용량의 콜드체인용 창고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베트남 현대화되는 유통채널들의 변화, 소득증가와 함께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등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p>
<p>경쟁동향</p>	<p>베트남의 콜드체인 기업은 크게 냉동고를 자가 보유한 기업과 냉동고를 임대한 기업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가 냉동고 보유 업체는 일용소비재나 식품 가공업체, 유제품 및 수산물 제조 가공 업체 등이며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 냉동고를 자가 보유한 주요 기업은 Hung Vuong, Vinh Hoan, Quoc Viet, Westfood 등이다. 반면 냉동고를 임대하는 경우는 콜드체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소비자를 상대한다. 임대 냉동창고는 대부분 주요 항구 근처에 마련되어 있어 고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주요 기업은 Emergent Cold, Preferred Freezer Services, ABA Cooltrans, Hoang Lai, Phan Duy 등이 있다.</p> <p>2024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베트남 남부에 물류거점을 설립, 현지 콜드체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상온은 물론 냉장·냉동 상품의 보관 및 운송이 가능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p> <p>이처럼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에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p>
<p>진출방안</p>	<p>영국의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인 Savills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콜드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콜드체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베트남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점 더 현대적인 저장 및 유통방식을 통해 신선 식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또 다른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인 J사는 콜드체인 관련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다양한 투자펀드 회사들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로 콜드 스토리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높은 도시화율, 베트남의 1억에 육박하는 인구, 온라인 쇼핑의 증가, 중산층의 성장 등으로 콜드 스토리지 및 유통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p> <p>베트남 룡탄 국제공항 건설과 무역협정에 따른 수출 인프라 개선으로 베트남산 농수산물에 대한 세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시일 내에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재편성하면서 수요만큼 저온 저장고와 유통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부족하며 중소형 창고 등으로 공급망이 분산돼 있어 포괄적인 서비스와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콜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는 자금이 투자돼야 하나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p>

○ 외국어 학습 앱(Ed-Tech)

<p>선정사유</p>	<p>투자자들은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베트남 에듀테크(EdTech) 산업을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한다. Do Ventures에 따르면 지난 8년 간 에듀테크 산업은 베트남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중 세번째로 높은 투자액을 기록한 분야이다. 총 벤처 캐피탈의 투자액은 1조300억 달러로 4조 6200억 달러를 기록한 전자결제 분야와 4조1600억 달러를 기록한 상거래의 뒤를 잇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베트남의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태동기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다.</p>
<p>시장동향</p>	<p>현재 베트남에는 300개가 넘는 에듀테크 관련 기업이 있으며, 사용자는 200만 명, 시장 규모는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트남의 에듀테크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젊은 인구구조, 높은 경제 성장률,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교육비 지출의 증가세,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 등이다.</p>

<p>경쟁동향</p>	<p>특히 2022년에는 베트남에서만 100개가 넘는 에듀테크 신생 스타트업이 생겨났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급격한 수요 증가 및 보급으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p> <p>베트남 로컬 IT 기업도 이러한 시장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베트남 Viettel, FPT, VNPT 모두 각자의 이 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기업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하 노이 국립외대,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과 함께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사업을 벌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 고 한국어 교육 스타트업 살랑코리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네이버는 베트남 최대 에듀테크 기업인 페니카 그룹과 교육용 솔루션을 웹 환경에서 제공할 계획이다.</p>
<p>진출방안</p>	<p>정규 초중고 교육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학습 플랫폼이나 시험 준비를 위한 과정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 하지만, 미취학 아동을 위한 콘텐츠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영유아 콘텐츠 시장을 잡으면 평생 고객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p> <p>콘텐츠의 내용은 쌍방 소통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사전 녹화된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코로나19로 화상 회의실을 이용한 쌍방 소통형 강의를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때, 사전 녹 화된 콘텐츠의 비율을 줄이고 실시간 대화식 수업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 형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및 AI와의 접목이 필수적인 이유다.</p> <p>B2B 시장의 접근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에듀테크 시장은 B2B 비즈니스가 먼저 성장을 주도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기관 등 이미 실체가 있는 기업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을 발주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무하다시피 했 던 에듀테크 산업이 급부상하게 됐고, 분야도 B2C 영역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경우 호찌민과 하 노이를 중심으로 공교육 분야의 에듀테크의 접목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으며 사내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B2B 시장은 확장성이 다분하다. ELSA, Edupia 등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 B2B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시 도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p>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SEAN / AEC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995-12-15	1996-01-01	- 2015년 1월: 품목의 93% 관세 철폐 - 2018년 1월: 관세 완전 철폐
ASEAN-China(ACFTA)	ASEAN, 중국	2002-11-04	2006-01-01	- 2015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ASEAN-Korea(AKFTA)	ASEAN, 한국	2005-12-13	2007-07-29	- 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 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ASEAN-Japan(AJCEP)	ASEAN, 일본	2008-04-01	2008-12-01	- 2019년 3월: 품목의 62.2% 관세 철폐 - 2024년 3월: 품목의 87.9% 관세 철폐 - 2025년 3월: 품목의 88.6% 관세 철폐
Vietnam-Japan(VJEPA)	일본	2008-12-25	2018-10-01	- 2020년 3월: 품목의 84.7% 관세 철폐 - 2025년 3월: 품목의 89.4% 관세 철폐 - 2026년 3월: 품목의 92% 관세 철폐
ASEAN-India(AIFTA)	ASEAN	2003-10-08	2010-01-01	- 2017년 12월: 품목의 71% 관세 철폐 - 2020년 12월: 품목의 78% 관세 철폐
ASEAN-Australia-New Zealand(AANZFTA)	ASEAN	2009-02-27	2010-01-01	- 2018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20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Vietnam-Chile(VCFFTA)	칠레	2011-11-11	2014-01-01	- 발효 후 10년까지 품목의 83.89% 관세 철폐 - 발효 후 15년까지 품목의 88.55% 관세 철폐 - 384개 품목, 4.12%는 관세 철폐 제외대상
Vietnam-Korea(VKFTA)	한국	2015-05-05	2015-12-20	- 2018년까지 일반 품목군의 76.9% 관세 철폐 - 2021년까지 민감 품목군의 23.1%(초민감품목수: 200개)를 0~5%로 인하
EAEU-Vietnam FTA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2015-05-29	2016-10-05	- 2016년 10월 5일~2017년 12월 31일 4,959개 관세선의 관세를 철폐(관세 인하 스케줄은 Decree No. 137/2016/ND-CP참고) - 2018년도, 155개 관세선에 관세 철폐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 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 레이시아, 브루나이	2016-02-04	2018-12-30	- 베트남의 발효 일자는 2019년 1월 14일
EU- Vietnam(EVFT A)	EU	2015-12-01	2020-08-01	- 2020년 8월 1일 발효- 베트남 발 효 직후 약 65% EU 제품에 대한 관 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 쳐 점진적으로 무관세 적용
ASEAN-Hong Kong FTA	ASEAN	2017-11-12	2019-06-11	- 베트남은 협정 발효 10년 내 품목 의 75% 관세 철폐- 발효 14년 내 또 다른 10% 거래 품목에 관세 인하 예정
RCEP(ASEAN+ 6)	ASEAN,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 질랜드	2020-11-15	2022-01-01	-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 -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 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022.01.01월 발효, 한국 2022년 2월 1일 발효 (단 베트남 수입 시 RCEP 적용은 2022.12.01 시행 예 정)
Vietnam - The UK (UKVFTA)	베트남, 영국	2020-12-11	2021-05-01	- 영국의 EU 탈퇴로 2020년 12월 31일 긴급 잠정 발표- 2021년 5월 1일 공식 발효
Vietnam - Israel	베트남, 이스라엘	2023-04-02		- 협상 시작 7년만에 공식 체결 협의 완료. 2023년내 발효 목표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Vietnam-EFTA	EFTA(아이슬란드, 리 히텐슈타인, 노르웨이 , 스위스)	2018년 제16차 협상 개시	
ASEAN-Canada	캐나다	2021년 11월 협상 개시, 2025년 까지 타결 목표	
Vietnam-UAE	아랍에미리트	2023년 4월 협상 공동선언문 서명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72131010,72131090, 72139120,72142031, 72142041,72279010, 72279090,72283010, 98110000	합금/비합금 철강제품 (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세이프가드(규 제중)	전세계	○ 부과기간 : 2020.3.22 ~ 2026.3.21	○ 판정결과 · 2023.3.22 - 2024.3.21 : 6.3% · 2024.3.22 - 2025.3.21 : 6.2% · 2025.3.22 - 2026.3.21 : 6.1% * 2023.3.22 : 일몰재심 후 조 치 연장 결정 (빌릿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
2	72139190,72171010, 72171029,72299099, 98391000	선 및 압연 제품 (Wire and rolled 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 제중)	전세계	○ 부과기간 : 2019.5.28 ~ 2026.3.21	○ 판정결과 · '23.3.22~'24. 3.21 : 6.3% · '24.3.22~'25. 3.21 : 6.2% · '25.3.22~'26. 3.21 : 6.1% * 2023.3.22 : 일몰재심 후 조 치 연장 결정
3	72107011,72107012, 72107013,72107019, 72107021,72107029, 72107091,72107099, 72124011,72124012, 72124013,72124014, 72124019,72124091, 72124092,72124099, 72259990,72269919, 72269999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	반덤핑(규제중)	중국, 한국	○ 부과기간 : 2019.10.24 ~ 2024.10.23	○ 판정결과 · 한국 : 4.95 ~ 19.25% · 중 국 : 2.56 ~ 34.27%

수입금지품목

베트남은 자국 정책 및 특정 물품 보호를 위해 법으로 수입금지 물품을 규정한다. 현재 시행령 69/2018/ND-CP의 부록 1에서 수입금지 14개 품목군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로 관할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지 품목 중 일부는 세부법령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공표하고 있다.

- 주요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폭발물 등의 군사 기술 장비
 - Sky lantern 관련 장치
 - 특정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 중고 소비재, 의료 장비 및 차량
 - 유통 금지대상 문화재
 - 중고 IT 장비
 - 출판물, 유통금지 우편, Radio equipment
 - 중고 차량(엠블런스, 트레일러 등)
 -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제품
 - 살충제
 - CITES에 따른 동식물
 - 폐기물, Scrap, C.F.C. 사용 냉장 설비
 - 석면이 포함된 제품 및 원자재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개요

베트남은 5,000여 개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쉽다.

베트남 정부는 정부 기관 별로 품목을 지정하여, 인증 방법 및 제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부처별 시행령 및 규칙에 의거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신청하며, 각 기관의 검사기관 심사를 거쳐 유통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2) 보건부 소관 검사 대상 품목

- 대상품목
 - 의료 설비 및 기구: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 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퓨음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코로나 진단키트, 다양도 수술대
 - 백신: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
-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e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 수입 의료 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하다.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다.

3)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해양양식용 사료: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불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보호제: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동물사료, 농후 사료

○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 동물 의약품 및 원료는 신규 수입 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의청에 검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통허가서 취득 후 수입 건마다 품질검사는 면제되며 주기, 불시 검사가 이뤄진다. 비료는 관할 검사기관에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을 하고 품질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도 신규 수입 시 관할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산업무역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질소 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

○ 품질검사 기관

-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품 수입 이전에 관할 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통관이 된다.

5) 교통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사블, 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랙트레이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화물운송용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분야용 보일러, 수송분야용 가압탱크, 수송분야용 다리형기중기, 갠트리 기중기, 철도 교통수단

○ 품질검사 기관

-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통관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구비 시 실제 검사 지점과 시간이 통보된다.

6) 건설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포틀랜드시멘트(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출라나(화산회)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 압축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자재 제조사에서는 필히 ISO9001: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압축콘크리트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관할 기관에 별도의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7)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 마스크, 절연 장갑, 절연장화, 분진 마스크, 용접용 안면 보호대, 압력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 병, 전기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 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8) 과학기술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 헬멧, 열연 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축 응력용 강철선, 450/750KV PVC 절연 전선, 순간 전기온수 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 기기, 헤어드라이어 및 기타 용구,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전기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리기, 전기 선풍기, 무연휘발유, 디젤연료, 3세 이하 장난감

○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 철근을 제외한 상기품목(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 포함)은 관할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한 후 임시통관이 이뤄지며, 이후 품질검사 완료 시 정식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9) 환경 관련 기준 및 인증제도

○ 수입 관련 환경기준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외국기업들의 무단 폐수 방류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6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 해당 환경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등은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제품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새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및 의약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및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 폐기물(형태 불문)
- 원료 이외의 용도로 수입하는 재활용품

재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시설,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및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보유 시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다.

○ 환경 관련 인증제도

2011년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RoHS) 개정을 발표했으며, 다음 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유럽연합 특정 유해물질 규제지침(EU RoHS)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상 물품

- 음향·시각 장비
- 자동판매기
- 작업 도구 (다만 공업용 대형 설치 공구는 제외)
- 대형 가전제품
- 조명기기
- 소형 가전기기
- 스포츠 장비
- 장난감

○ 예외 품목

- 배터리, 축전지
- 전기전자제품(EEE) 보수/수리용 부품
- 전시회/박람회 기념품, 샘플, 전시품
- 환적물품

○ 사용 제한 물질

- 납(Pb)
- 카드뮴(Cd)
- 6가 크롬(Cr6+)
- PBB
- PBDE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위해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허용함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음을 기업 홈페이지 공지, 사용자 설명서 기재, 전자매체수록 및 배포,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량 관리서류는 관리·감독관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규제대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이를 미리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환경규제와 관련된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베트남 국내로 절대 반입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반드시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해야 하며, 위반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TBT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입억제조치의 일환으로 환율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일련의 수입 규제 조치(화장품, 자동차, 휴대폰 등 베트남 정부 규정한 사치품목의 수입통관 절차 강화 및 일시적 수입관세 인상)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는 조치로서 그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과도 관계가 있는바 향후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 등 다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승용차 등록세 및 특별 소비세, 부가세 인상 등의 조치들이 있다.

1)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베트남에 중고차량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은 최소 6개월 이상 5년 미만 연식의 차량(주행거리 10,000km 이상) 중 품질, 안전, 환경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24인승 미만의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35~150%까지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입관세를 계산방법도 정액 관세와 정률 관세를 혼합하는 등 세액계산 방법이 기타 제품과 달리 복잡한 편이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7월 15일부로 Decree 26/2023/ND-CP를 통해 아래와 같이 수입관세를 변경하였다.

- 1,000cc 이하, 9인승 이하 (HS 8703)
 - 대당 10,000\$ 정액 관세 부과
- 1,000cc 초과, 9인승 이하 (HS 8703)
 - 승합차를 제외한 차량, 구급차, 영구차, 좌수호송차, 이동주택형차량(Motor-Homes)는 아래의 관세액 중 낮은 금액
 -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x 200%
 -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x 150%) + 10,000\$
 - 기타 차량
 - 1,000cc를 초과하지만 2,500cc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x 신차 기준 관세율) + 10,000\$
 - 2,500cc를 초과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x 신차 기준 관세율) + 15,000\$
- 10인승~15인승 (HS 8702)
 - 배기 용량 2,500cc 이하: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x 신차 기준 관세율) + 10,000\$
 - 배기 용량 2,500cc 초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x 신차 기준 관세율) + 15,000\$

중고차량 관세 인상 조치는 16인승 이하 소형차에 한하며, 중고 차량과 신차의 세금 격차를 줄여 탈세 방지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해외에서 생산된 소형 신차를 중고 차량으로 위조해 고율의 관세 회피를 통해 가격을 낮추어 자동차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2) 수입 농산물 수입규제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에 대한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이 수입국에서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SPS 기준 상황이 필요한 시점으로 베트남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 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줄이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 노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물성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베트남이 수출국으로 인정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어야 하고 적절한 포장과 저장으로 라벨 표시 규제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 한국은 2011년 11월부로 수출가능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베 FTA 협정문에서는 대부분의 HS CODE에 대해서 관세 양허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수산물도 수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과일은 포도, 사과, 배, 딸기, 감이며, 감은 2015년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재협상을 통해 2020년부터 수출할 수 있어졌다. 향후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 불량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 폐품 수입규제

2014년 2월 20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해 2014년 6월 23일 개정안의 국회에 상정됐다.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 허가과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됐으며 폐품 수입상의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 과정이 모두 관리 대상이 된다. 수입 가능한 폐품 또한 해당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2020년 11월 15일 이후 결정문 28/2020/QĐ-TTg에 의거하여, 1)고철, 강철 2) 플라스틱 3)종이 4)유리 5)비철금속 6)슬래그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직접 생산 원료로 투입하기 위해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폐품 재활용 제조를 위한 기술과 설비는 물론, 재활용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막기 위해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및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수입폐품이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출, 또는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제조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이 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 보호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이는 폐기물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위험 및 위험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폐품 종류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철강 스크랩 수입 시

- 500톤 미만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10%
- 500톤에서 1,000톤 미만: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15%
- 1,000톤 이상: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

* 종이 및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 시

- 100톤 미만 :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15%
- 100톤에서 500톤 미만: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18%
- 500톤 이상: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

* 이외의 제품의 스크랩 수입 시

- 100톤에서 500톤 미만: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18%
- 500톤 이상: 수입 스크랩 선적 총액의 20%

지방 행정당국에 수입폐품과 관련된 법규 위반 행위를 관리·감독·단속·처벌할 임무를 부여해 매년 수입폐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환경자원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이 허용되는 폐품 항목을 세부화하는 것과 더불어 수입폐품 거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폐품 수입상들은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출하는 한국 및 타 국가 수출상들은 기존 수출 품목이더라도 신규 법안에 명시된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포함될 경우 더 이상이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입폐품 재활용 후 수출되는 비철제에 대해서 수출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4) 비료 수입규제

베트남 비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을 108/2017 / ND-CP에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비료 품질 관리는 산업 무역부와 농업 농촌 개발부의 두개 관청이 담당하는데 산업 무역부는 무기비료를, 농업 농촌 개발부는 유기비료를 주로 관리한다. 본 법령에 따르면 비료를 생산, 판매, 유통하는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비료 수입 시에는 베트남 국가표준(TCVN)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시장 유통 전 적합성 마크(CR 마크)가 필요하다.

비료 수출입 기관 및 관련 업체들은 수입 시 국가표준 획득 및 CR 마크 관련 구비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농업 농촌 개발부가 지정한 '수출입, 판매, 유통 가능 비료 리스트'에 있는 비료 제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업체에 대해 2014년 2월부터 12개월간 각자가 수출입하는 비료 대상에 대해 관리 규정에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5) 완성자동차 수입 규제

2020년 2월 5일 자동차 수입 절차와 관련된 Decree 17/2020/ND-CP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조치로 2년 가까이 강화되었던 완성자동차 수입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수입요건, 자동차 수입 사업라이센스의 효력 정지 및 철회, 자동차 제조 및 조립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라이선스 효력 정지 및 철회 규정 등을 삭제 혹은 수정 조치하였다.

수입완성차 수입자는 수출국의 허가를 받은 VTA인증서(Vehicle Type Approval)를 구비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최초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베트남 품질검사 기관은 첫 번째 수입 샘플만 검사하고 통과하면 최대 36개월의 효력이 있는 VTA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6) 중고 기계설비 수입규제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중고 기계설비는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베트남에서 제도가공을 위한 설비는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되며 HS 코드는 84류와 85류이다.

2019년 6월 15일 중고 기계설비 수입법 개정안(Decision No. 18/2019/QD-TTg)이 발표되었으며, 2022년 12월 하이테크 기업 또는 하이테크 응용 프로젝트 또는 투자법 제20조 2항에 명시된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프로젝트의 중고 기술 라인에 대해서도 중고 기술 라인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다.

○ 생산라인용 설비

-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처음 설계된 생산케파(capex) 혹은 효율성 대비 85% 이상의 성능·품질을 보유해야 함.

-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법령(Decree No. 76/2018/ND-CP)에서 제한·금지한 기술은 수입 불가함.

- 생산라인에 적용되는 기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어야 함.

○ 개별 기계설비

-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때 제조월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08년 1월 생산기계를 2018년 12월에 수입하려는 경우 {2018-2008=10년}으로 계산함. 특정 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포함되는 기계의 경우 부록 1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15~20년 적용할 수 있음.

-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 하이테크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적용 프로젝트 사용 중고 기술 라인

- 하이테크 기업 또는 하이테크 응용 분야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 또는 투자법 제20조 2항에 규정된 특별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중고 기술 라인

중고기계 수입 시 아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 생산라인용 설비

- 기본 수입통관서류

-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위탁 수입의 경우 위탁 서류가 있어야 함)

- 중고기계 감정증명서(이름, 제조연도, 상표, 시리얼넘버, 모델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국가기술 표준 부합 여부 등)

○ 개별 기계설비

- 기본 수입통관서류

-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 G7 국가 및 한국에서 생산된 기계의 경우, 제조업체가 발행한 수입 요건 충족 인증서 원본(해당 증명서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 번역본도 첨부 필요)

-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제조업체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 검사기관의 중고기계 감정 증명서

○ 하이테크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적용 프로젝트 사용 중고 기술 라인

- 첨단 기술 기업 증명서 사본 또는 과학 기술부가 발행한 첨단 기술 응용 활동 증명서 사본 또는 투자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승인 결정 투자 정책 사본 또는 프로젝트가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관할 국가 기관과 이 인정한 서면 계약서 사본

- 기술 라인의 중고 기계 및 장비 목록

- 기술계열을 수입, 설치, 완성, 가동한 후 지정된 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술계열 평가 등록서

한편, 개정법은 제조연한 10년 초과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해두었다. 개정법 9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연한은 10년을 초과 했을지라도 생산량이 최초 설계 대비 85% 이상이며,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 이하일 경우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별도의 서류를 보냄으로써 수입 허가 요청이 가능하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돼 있다.

품목분류(HS코드)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을 사용하고 있으며, AHTN의 2022는 베트남 국내법 개정 지연으로 2022년 12월 30일부터 사용가능하였다.

품목분류는 고정적이나 세율은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매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해 신고해야 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된다. 이 재결정에 신고자가 불복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제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해,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돼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우대 관세율(MFN 관세율), 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일반관세율(Ordinary rates):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한다. 단,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10조에서 규정한 관세율 부과 원칙에 의거해 정부 총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rates):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진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

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

https://www.customs.gov.vn/index.jsp?pagelD=2313&id=NHAP_KHAU&name=Imports&cid=4154 (검색 일자 2023.11.28)

- 관세청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베트남어 및 영문 조회가 가능

2) VNTR(Vietnam National Trade Repository)

- <https://vntr.moit.gov.vn/tariff/tfta> (검색 일자 2023.11.28)

- 체결 FTA 협정별 특혜 관세율 변경 추이 확인 및 수입 국가별 상이한 FTA 협정별 특혜 관세율 확인이 가능
- 연도별 특혜 세율 단계적 철폐 확인 가능
- 사용 방법 베트남 무역포털(VNTR) 활용법 A to Z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80&CONTENTS_NO=1&bbsSn=243&pNttSn=193912)

3) 호치민 투자진흥청(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ITPC)

- http://www.itpc.gov.vn/web/en/importers/how_to_import/tax (검색 일자 2023.11.28)

- 투자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조회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됨
- 챗터(Chapter)별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MFN 세율, 부가가치세율과 FTA 세율을 함께 확인 가능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베트남 항만은 '베트남 항만 마스터플랜 비전 2020에 관한 결의안(Decision 2190/QSS-TTg)'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중 베트남의 북부, 중부, 남부를 대표하는 3대 대표 항구는 하이퐁항(Hai Phong), 다낭항(Da Nang), 호치민항(Hochiminh)이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베트남 물동량 처리 실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남부 지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 비중은 베트남 전체 물동 처리량의 약 70%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중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이처럼 베트남 남부 지역의 물동 처리량이 높은 이유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의 인근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베트남 해운 운송의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 인프라 면에서 남부에 위치한 항구들은 8만 DWT급 규모 이상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선박 수용 규모가 우월하다. 참고로 남부의 까이몹 항(Cai Mep)은 16 DWT급 선박까지 수용 가능하므로, 선박 규격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까이몹 항 및 인접국(싱가포르, 홍콩)을 경유해 화물을 운송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찐머이항(Chan May)항과 캄란항(Cam Ranh)은 최대 5만 DWT급 선박까지만 수용 가능하며, 북부 지역은 꽝닌항(최대 7만 5천 DWT급 선박 수용 가능)을 제외하고는 선박 수용 규모가 5만 DWT급 미만이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베트남은 3개 주요 국제공항(①호치민 - 떤선녓 ②하노이 - 노이바이 ③다낭 - 다낭)을 중심으로 항공 물류와 여객을 수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연간 여객 수용량은 호치민 시 떤선녓 공항이 약 3,200만 명,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이 약 2천만명, 다낭 공항이 약 9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남부지역의 롱탄 신공항의 1단계 기공식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최대 국제공항의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3) 유의사항

○ 복잡한 통관절차: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절차가 지목된다.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베트남은 수입 통관 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카피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아시안 싱글 윈도우 전자교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원산지 증명서 D (C / O 양식 D) 제출이 가능하다.

○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베트남은 현재 한-베 FTA를 포함해 총 16개 협정을 발효하고 있다.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대부분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베트남은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 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베트남-EU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2년, 베트남-EAEU FTA는 사후 적용 불가하며, 기타 협정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 통관 지연: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 획득 요구: 베트남은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 기계, 의료기기 등에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베트남품질마크) 획득을 요구한다. CR Mark 인증은 강제인증으로써 베트남 인증기관 담당자에 의해 생산공장 현지실사(Scheme 5) 및 컨테이너 샘플 검사(Scheme 7)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Scheme 7의 경우 추가로 샘플 검사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급행료(Under Table Money)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대상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가정용 프라이팬, 온수기, 전자레인지, 가정용 다리미 등의 전기제품류가 CR마크 의무 대상이며, 그 외에 강제대상 카테고리로는 기계, 의료기기, 완구, 개인보호장비, 압력용기, 가스기기, 건축자재 등이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무역(Trading)과 가공무역(Processing) 형태로 구분된다.

○ 일반무역은 모든 형태의 상업적 물품의 통관을 통칭하나 일부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관상 특례를 정해 놓은 규정도 있다.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① 수입신고 → ② 세관 서류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 통관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5~7일 정도 소요

○ 가공무역은 수입원재료를 공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뜻한다.

- 수출물품의 임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료·물자는 수입부터 제품생산 과정과 제품이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는 등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음.

- 개정 수출입세 시행령(18/2021/ND-CP)에 의거하여 임가공 업체가 수입한 수입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트남 영토 내 다른 기업에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임가공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입 원재료의 관세는 면제된다.

○ 수출물품 임가공 업체는 수입 원료·물자 사용에 있어 관세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작업장을 관세기관에 통보 - 수출용 물품의 수입 원료와 물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사용 목적 변경 시 수입 원료와 물자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진행)

- 수출물품과 수출용 원료와 물자는 제조구역 내에 보관(제조구역 밖에 보관하는 경우, 관세당국 허가 필요)

- 임가공 또는 제조 공장에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절히 보관하고 회계처리, 통계, 장부, 데이터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

- 업체는 관세기관이 검사하는 때, 장부, 입증서류 및 물품을 제시해야 함.

- 업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수입원료와 물자의 관리·사용내역·결산을 보고 베트남의 수출통관은 수입 통관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간소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수출세 부과대상 또는 수출 허가대상인지에 따라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사 또는 운송 주선인에 선복 예약 → ② 수출 선적서류 준비 및 전자통관 시스템(e-Custom)을 통한 수출신고서 전송 또는 서면 수

출신고서의 제출 → ③ 세관의 수출신고 접수(검사 면제의 경우 승인) → ④ 수출 물품의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⑤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이동 → ⑥ 검사대상의 경우 선적 전 수출물품 검사 → ⑦ 세관 승인 후 선적 → ⑧ 수출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⑨ 통관 종료로 이루어진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적하한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4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특송 서비스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 출국 2시간 전까지 제출).

통관 시 유의사항

◦ 통관 관련 법규 잦은 변경 : 베트남의 경우 아직 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 아니라 이 내용이 수출입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HS CODE 분류 사전 확인 필수 : 수출국가와 베트남의 HS CODE 차이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통관 지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에도 문제가 되어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전 사전에 HS CODE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와 베트남 수입통관 시 HS CODE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처분되는 사례도 많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 복잡한 통관절차 :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절차가 지목된다.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베트남은 수입 통관 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카피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아시안 싱글윈도우 전자교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원산지 증명서 D (C / O 양식 D)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베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전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다.

◦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 베트남은 현재 한-베 FTA를 포함해 총 16개 협정을 맺고 있다.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베트남은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 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베트남 -EU FTA, 베트남 UK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2년,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를 포함한 그 외의 협정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이다.

◦ 통관 지연: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 획득 요구: 베트남은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 기계, 의료기기 등에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베트남품질마크) 획득을 요구한다. CR Mark 인증은 강제인증으로써 베트남 인증기관 담당자에 의해 생산공장 현지실사(Scheme 5) 및 컨테이너 샘플 검사(Scheme 7)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Scheme 7의 경우 추가로 샘플 검사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급행료(Under Table Money)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대상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가정용 프라이팬, 온수기, 전자레인지, 가정용 다리미 등의 전기제품류가 CR마크 의무 대상이며, 그 외에 강제대상 카테고리로는 기계, 의료기기, 완구, 개인보호장비, 압력용기, 가스기기, 건축자재 등이 있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T&C LOGIS

주소	63 Lo Lu, Truong Thanh Ward, District 9, Ho Chi Minh City, Vietnam
이메일	bsseo1216@gmail.com
비고	일반창고, 산업단지내(호치민시 9군) 위치

◦ 하나로 TNS(HANARO TNS VIETNAM CO.,LTD HO CHI MINH BRANCH)

주소	7 Floor, 60A Truong Son, Ward 2, Tan Binh District, HCMC
전화번호	84-28-3547-1991~5
이메일	leekwanghee@htns.com
홈페이지	https://www.htns.com

◦ FI LOGISTICS CO., LTD

주소	Room 2001A, 20th Fl., Centec Tower Bldg.,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chiminh, Vietnam
전화번호	84-28-3823-3601/4
이메일	korvn@filogistics.net
비고	하노이, 다낭, 호치민

◦ 카고러쉬 인터네셔널(Cargorush International Co., Ltd.)

주소	77 Nguyen Trong Loi Street, Ward 4, Tan Bi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전화번호	84-28-3948-0931
이메일	info@cargorush.com
홈페이지	https://cargorush.com.vn/en/
비고	관세 컨설팅, FTA 컨설팅, 임가공면세 컨설팅, EPE 컨설팅

◦ KCTC VIETNAM

주소	Bao Viet Financial Centre Bldg, 10F, 233 Dong Khoi St., Dist 1, Ho Chi Minh City , Viet Nam
----	---------------------------------------------------------------------------------------------

전화번호	84-28-6258-3706
이메일	sales@kctcvn.com
홈페이지	http://www.kctcvn.com
비고	보세창고 운영

◦ PANTOS LOGISTICS VIETNAM

주소	12A FL Handico building, Me Tri Ha New Urban, Pham Hung Road, South Tu Liem District, Ha Noi, Vietnam
전화번호	84-24-3936-2814
이메일	peter.yoo@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CJ대한통운

주소	35 Ton Duc Thang, Dist. 1, Ho Chi Minh City
전화번호	+84-909-997-433
이메일	sj.kim81@cj.net

◦ DHL (Ho Chi Minh Office)

주소	6 Thang Long, Tan Binh, Ho Chi Minh City
전화번호	84-28-3844-6203
이메일	marcus.noh@dhl.com
홈페이지	http://www.dhl.com.vn/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베트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법인 소재 예정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또는 공단관리위원회(법인 소재 예정지가 공단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 기획투자국에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 기업등록신청서
- 회사 정관
- 사원명부
- 다음의 각 문서의 사본

a) 사원이 개인, 법적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의 법적 공인신분증 사본

b) 사원이 단체인 경우에 단체의 법적 문서 및 수권대리인 선임서, 단체인 사원의 수권대리인의 개인의 법적 공인신분증 사본. 사원이 외국단체인 경우, 단체의 법적 문서의 사본에는 영사 인증이 필요하다.

c) 투자법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

○ 주식회사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 기업등록신청서
- 회사 정관
- 창립주주명부, 외국투자자 주주명부
- 다음의 각 문서의 사본

a) 창립주주와 외국투자자 주주가 개인, 법적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의 법적 공인신분증 사본

b) 주주가 단체인 경우에 단체의 법적 문서 및 수권대리인 선임서, 단체인 창립주주 및 외국투자자 주주의 수권대리인의 개인의 법적 공인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주주가 외국단체인 경우, 단체의 법적 문서의 사본에는 영사 인증이 필요하다.

c) 투자법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등록신청서 (기업법 제23조에 의거)

- 담당기관: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의 기획투자국 소속 사업등록기관은 기업 등록 증명서(ERC)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ERC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기업등록신청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업 상호
- 기업의 본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주소(있을 시)
- 사업분야·업종
- 정관자본금, 개인기업 소유주의 투자자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종류, 종류별 주식의 액면가, 종류별 수권주식의 총수

- 세무등록정보
- 예상근로자수
- 개인기업의 소유주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성명, 서명, 현주소, 국적, 개인의 법적 공인신분증 정보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성명, 서명, 현주소, 국적, 개인의 법적 공인신분증 정보

○ 설립될 법인의 정관(기업법 제24조에 의거)

회사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상호, 주소(있을 시)
- 사업분야·업종
- 정관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액면가
- 합자회사의 사원, 유한책임회사의 회사 소유주·사원, 주식회사의 창립주주의 성명, 현주소, 국적. 유한책임 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에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출자지분의 가치. 주식회사의 경우에 창립 주주의 주식수, 주식의 종류, 종류별 주식의 액면가
-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및 의무
- 관리조직구조
- 기업 법적 대표자의 수, 관리직명, 권리 및 의무, 법적 대표자가 일 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 각 법적 대표자의 권리 및 의무 분할
- 회사의 결정 통과 방식, 내부 분쟁해결 원칙
- 관리자와 감사인의 급여, 수당, 상여금 산정 근거와 방법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자신의 주식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
- 세후이익 분배 및 사업손실 처리의 원칙
- 회사 해산의 경우, 해산 순서 및 자산 청산 절차
- 회사 정관 변경, 보충 방식

기업등록 시의 정관에는 다음의 개인의 성명 및 서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 합자회사의 경우에 사원
-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개인인 회사소유주 또는 단체인 회사소유주의 법적 대표자
-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개인인 사원, 단체인 사원의 법적 대표자 또는 수권대리인
- 주식회사의 경우에 개인인 창립주주, 단체인 창립주주의 법적 대표자 또는 수권대리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의 사원명부 및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기업법 제25조에 의거)

사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의 개인인 사원, 주식회사의 개인인 창립주주와 외국투자자 주주의 성명, 서명, 국적, 현주소
-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의 단체인 사원, 주식회사의 단체인 창립주주와 외국투자자 주주의 기업 상호, 기업코드 및 본점 주소
- 유한책임회사의 단체인 사원, 주식회사의 단체인 창립주주와 외국투자자 주주의 법적 대표자 또는 수권대리인의 성명, 서명, 국적, 현주소
-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 각 사원의 출자지분, 출자지분의 가치, 출자지분 보유율, 자산의 종류, 자산의 수량, 종류별 출자자산의 가치, 자본출자 기한, 주식회사의 경우에 각 창립주주 및 각 외국투자자 주주의 주식수, 주식의 종류, 주식 보유율, 자산의 종류, 자산의 수량, 종류별 출자자산의 가치, 자본출자 기한

○ 회사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여권)

- 대표자가 베트남인일 경우 주민등록증(구.CMND, 신.CCCD) 사본

○ (관련법상 필요한 경우) 법적 자본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 (사원 및 주주가 법인인 경우)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설립사무 대리위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장, 대리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 영사공증 필요)

○ (사원 및 주주가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법무법인 또는 컨설팅 업체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행정 대행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특정 업종 또는 투자지역 인허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법인 설립 후속 절차

- 각 인민위원회 사업자등록과 설립정보 제출
- 자본금 계좌(DICA) 및 법인운영계좌 개설 및 등록
- 인감 제작
- 전자서명 제작
- 경리장 신고
- 사업면허세 납부
- 부가세 신고방법 통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 회계 시스템 등록
- 고정자산 명세 신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 고용 현황 신고 및 취업규칙 등록
-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 또는 취업허가 면제 신청
- 정규직 사회보험 등 가입
- 건설원가감사 및 건물소유권 등기
- 서버라이선스 취득(소매유통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 외 추가 서버 라이선스 취득이 요구된다)
-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및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 라이선스 취득 (필요한 경우)
- 기초설계, 방화 및 건축 면허 승인 신청 (필요한 경우)

투자인센티브

○ 법인세 인센티브

베트남에서 법인세 인센티브는 크게 법인세 우대세율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제도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0%이다. 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 등 천연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법인세 우대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세율은 10%, 15%, 17% 세 가지가 있으며, 투자 지역 및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적용세율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참고로, 우대 세율은 기업이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수익을 얻는 첫 해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통상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1급지 도시 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면제/감면 기간은 프로젝트로부터 과세 소득을 얻는 첫 해부터 시작된다. 만약 기업이 첫 3년 동안 과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세제 면제/감면 기간은 프로젝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첫 해인 4년차부터 시작된다.

○ 수입 관세 면제

수출입법 107/2016/QH13에 의거 투자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 및 물자, 부품 등 해당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관세 면제 대상이된다.

○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는 토지법(45/2013/QH13)에 따라 토지사용료,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투자법 61/2020/QH14에 의거 베트남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도덕, 국민 보건 등의 이유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총 228개가 해당한다.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해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에 속해있으며, 투자법에 의하면 각 사업투자 조건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 포털 상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각 지방성 마다 허가 요건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대상 사업이 이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투자 금지 분야

- 투자법 부록 1, 2에 명기된 각 마약 물질, 화학물질 생산·광물사업
- 투자법 부록 3에 명기된 멸종위기 야생 식물·동물 또는 해양동물 취급 사업
- 매음(賣淫)·매춘 사업
- 장기·인신 매매
-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활동
- 연화(폭죽) 사업
- 채권추심업

○ 총리 또는 각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승인이 필요한 분야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 계획안:

- 산간지역에서 1만명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 2만명 이상이 이주·재정착을 요구하는 투자계획안
- 공항·비행장, 공항·비행장 활주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매년 수용력이 100만톤 이상인 공항·비행장 화물터미널의 신규 건설 투자계획안
- 항공여객운송 사업의 신규 투자계획안
- 선착장, 특별항구에 속하는 선착장, 1급 항구에 속하는 2조 3천억 동 이상인 투자자본금의 규모를 가진 선착장·선착장구역의 신규 건설 투자계획안
- 석유·가스 가공 투자계획안
- 도박·카지노 사업 투자계획안 (외국인을 위한 상금을 주는 온라인게임 사업 제외)
- 대규모 주택 및 도시 건설 투자계획안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의 기반시설 건설 및 사업 투자계획안
-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갖추는 통신서비스, 산림 조성, 출판, 언론 사업분야에서의 외국투자자의 투자계획안
- 2곳 이상의 성급 인민 위원회의 투자방침 승인권한하에 있는 투자계획안
-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 총리의 투자방침 승인 또는 투자결정 관할하에 있는 그 밖의 투자계획안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 계획안:

- 경매나 입찰 과정 없이 국가로부터 토지 교부나 임대를 요구하거나 양도를 받는 투자계획안, 토지 이용 목적의 변경을 요구하는 투자계획안. 단,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토지 교부나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 토지사용 규모가 300헥타르 이상이거나 인구 50,000명 이상인 주택(매매, 임대, 임대 구매), 도시 지역 건설에 대한 투자 계획안.
- 골프장 건설 및 사업 투자계획안.

- 외국투자자나 외국투자자본을 보유한 경제 단체가 도서, 국경지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을·읍·동,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지역에서 실행하는 투자계획안.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특구

경제특구(EZ, Economic Zone)는 투자유치, 지역사회경제발전, 국방 안보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안경제특구와 국경경제특구로 구분된다. 베트남에는 2022년 11월 기준 19개 해안경제특구와 28개 국경경제특구가 계획·조성·운영되고 있으며, 해안경제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11월 확인 자료)

2) 수출가공공단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수출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공단으로 입주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가공공단 내 기업은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구분된다. 수출가공기업이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되며, 매입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 산업공단에서도 수출가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3) 산업단지 (공단)

베트남 부동산중개인협회(VARS)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상 전국 63개성시 중 61개 성시에 563개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그 중 2023년 11월 기준 397개 산업단지가 인프라 투자가 완료되어 활동 중이며, 총 면적은 약 87,100 헥타르(ha), 산업용지는 약 58,700 헥타르에 이른다. 106개 산업단지 현재 투자자 모집 또는 인프라 개발 단계에 있다. 산업단지 밀집도가 가장 높은 5개 성시는 동나이성, 빈중성, 호치민시, 롱안성(남부), 박닌성(북부)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아 전국 산업단지 입주율은 약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호치민시를 포함해 그 인근 지방성시의 산업단지 입주율이 전국 평균치 보다 높은 약 90%이며, 빈중성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입주율은 약 95%에 이른다."

산업단지

○ 베카멕스 -빈푹공단(Becamex-Binh Phuong Industrial Park)

규모	46,330,000㎡
위치	빈푹성
임차료	95달러(부가세 미포함)/㎡/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베카멕스(Becamex) - 주소: 8 Hung Vuong Blvd., Binh Duong New City, Binh Duong, Vietnam - 대표번호: +84-274-3822-655 - 팩스: +84-274-3822-713 - 홈페이지: www.becamex.com.vn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ecamex - 한국인 담당자: 강호동 부사장(모바일: +82-10-5318-7861, +84-91-3860-928 / 이메일: becamex@naver.com)

○ 롱하우공단(Long Hau Industrial Park)

규모	4,410,000㎡
위치	롱안
임차료	240달러(부가세 미포함)/㎡/잔여 토지사용권 기간(2066년까지)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C - 주소: Long Hau Commune, Can Giuoc District, Long An Province - 대표번호: +84-8-3781-8929 - 팩스: +84-8-3781-8940 - 홈페이지: https://longhau.com.vn/en - 한국인 담당자: Ms. Phuong Anh*(모바일: +84-989-098-288/ 이메일: anh.tp@longhau.com.vn) *코리아 데스크 담당자(팀장)

○ 바우방공단(Bau Bang Industrial Zone)

규모	20,000,000㎡
위치	빈중
임차료	150달러(부가세 미포함)/㎡/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카멕스(Becamex) - 주소: 8 Hung Vuong Blvd., Binh Duong New City, Binh Duong, Vietnam - 대표번호: +84-274-3822-655 - 팩스: +84-274-3822-713 - 홈페이지: www.becamex.com.vn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ecamex - 한국인 담당자: 강호동 부사장(모바일: +82-10-5318-7861, +84-91-3860-928 / 이메일: becamex@naver.com)
비고	1ha 규모의 소규모 부지도 분양 가능

○ 푸미3공단(Phu My 3 Industrial Zone)

규모	8,000,000㎡
위치	바리아-붕따우
임차료	160달러/㎡/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빙푸미(Thanh Binh Phu My) - 주소: Phuoc Hoa, Tan Thanh, Ba Ria - Vung Tau, Vietnam - 대표번호: +84-254-393-6838 - 팩스: +84-254-393-6839 - 홈페이지: http://www.phumy3sip.com/ - 한국인 담당자: 최홍연 부사장(모바일: +84-254-3936-838 / 이메일: choi@phumy3sip.com)

○ VSIP 공단

규모	10,000,000㎡
위치	빈증, 빈딘 등
임차료	130달러/㎡/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SIP - 주소: No. 8 Dai lo Huu Nghi, VSIP, Thuan An City, Binh Duong Province - 대표번호: +84-274-3743-898 - 홈페이지(영어): https://www.vsip.com.vn/ - 한국인 담당자: 최근환 이사(모바일: +84-909 605 976 / 이메일: choi.keunhwan@vsip.com.vn)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전력 : 350MW -상수도 : 품질 표준 준수 QCVN 01:2009/-BYT, 최대용량: 50,000m3/일 -폐수처리량: 40,000m3/일

〈자료원 : 각 산업단지 담당자〉

주요 지역별 여건

○ 하노이(Hanoi)

- 면적: 3,359km²
- 인구: 809만 3천 명 (2022년 5월 확인 자료)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 부동산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 특징: 베트남의 수도로 남부 호치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으나 최근 베트남 정부의 남부 균형 발전계획 하에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 중
- 비고: 삼성(한국-R&D), 경남(한국-부동산), 대우(한국-부동산), VMEP(대만-오토바이), 캐논(일본-프린터), YAMAHA(일본-오토바이), Panasonic(일본-가전) 등 진출

○ 호치민시(Hochiminh City)

- 면적: 2,061km²
- 인구: 903만 8천 명 (2022년 5월 확인 자료)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 부동산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 특징: 베트남의 남부 최대 도시, 경제 중심지
- 비고: 포스코(한국-건설), 삼성전자(한국-가전), GS(한국-유통, 건설), 롯데(한국-유통) 대원(한국-부동산), CJ(한국-유통), Intel(홍콩-전자), 코카콜라(싱가포르-음료), 이마트(한국-유통), 하이네켄(싱가포르-음료), 태광산업(한국-섬유) 등 진출

○ 다낭(Danang)

- 면적: 1,285km²
- 인구: 114만 1천 명(2022년 5월 확인 자료)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 부동산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 특징: 베트남 중부의 최대 도시이자 관광 중심지
- 비고: Universal Alloy Corporation(미국-항공기부품), Yamato Sewing Company(일본-봉제기계), 덴티움(한국-임플란트), 롯데(한국-유통), 팬코(한국-섬유), 대원(한국-건설, 부동산), 대량(한국-자동차부품), VAFI(한국-자동차 부품) 등 진출

○ 동나이(Dong Nai)

- 면적: 5,863km²
- 인구: 311만 3천 명 (2022년 5월 확인 자료)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 화학공업, 전자 산업 등
- 특징: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상당 수 제조기업 상주
- 비고: 태광(한국-신발), 효성(한국-경공업), 창신(한국-신발), 화승(한국-신발), LG(한국-화장품), Cargill(미국-의류), Ajinomoto(일본-식품), Shisheido(일본-화장품), Vedan(싱가포르-식품), Yokohama(일본-튜브), 포스코(한국-철강) 등 진출

○ 하이퐁(Hai Phong)

- 면적: 1,562km²
- 인구: 203만 3천 명 (2022년 5월 확인 자료)
- 주요 산업: 중공업 및 경공업, 선박 및 운송
- 특징: 베트남 제3의 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 지역 경제의 주축, 북부 최대 항구인 하이퐁항 위치
- 비고: LG(한국-전자, 전선/카메라 모듈), GE(미국-가전), Nomura(일본-공단), Vinasteel(호주-철강) 등 진출

○ 빈중(Binh Duong)

- 면적: 2,695km²
- 인구: 242만 6천 명 (2022년 5월 확인 자료)
- 주요 산업: 경공업(섬유/봉제), 물류
- 특징: 베트남 남부 한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인투자기업 최다 진출 지역
- 비고: 코오롱(한국-폴리에스터 원사), 오리온(한국-식품), 레고(덴마크-완구) 등 진출

○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 면적: 1,989km²
- 인구: 114만 8천 명 (2022년 5월 확인 자료)
- 주요 산업: 중공업, 석유/화학
- 특징: 베트남 남부 석유생산지 인근 지방성으로 철강, 석유/화학업종 밀집 지역
- 비고: 원일특강(한국-특수강), 효성화학(한국-PP), 포스코(한국-철강), 고려아연(한국-아연) 등 진출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외국인직접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2023년 11월 누계기준, FDI는 38,622개 프로젝트, 투자액 4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누계 금액기준 투자국 1위는 한국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6%), 일본(15.5%), 대만(8.5%), 홍콩(7.2%)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역 봉쇄에 준하는 고강도 사회적 격리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기간 신규 투자/진출, 재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출장, 사전답사가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2021년 10월 이후 베트남판 '뉴노멀', '위드코로나' 선언에 따라 경기가 반짝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 기간 양적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세계 각국이 고강도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고금리,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고, 러·우 사태로부터 촉발된 에너지 공급 불안정 등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상존하면서 외국 기업은 여전히 베트남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우위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중국 대체 투자처 또는 중국+1 투자처로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한편, 2019년까지 대기업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대외여건 악화,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브라운 필드' 투자 트렌드가 이어져 오고 있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23년 1~10월 FDI 프로젝트 투자 금액(누계기준)은 257억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주요 투자국의 대부분은 대외여건 악화로 2021년에서 2023년 3월까지 전체적인 투자 규모면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다 4월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2023년에 들어서 싱가포르, 중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10월 투자액 기준 싱가포르 1위(46억5000만 달러), 한국 2위(39억2000만 달러), 홍콩 3위(35억7000만 달러), 중국 4위(33억7000만 달러), 일본 5위(30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업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공급선 다변화 전략으로 제조업 베트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계 자본인 홍콩과 중국 본토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라 유통업, 무역업, 요식업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분야가 추가로 개방되면서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봉제 업종의 신규 투자/진출 보다 전자/전기/부품 등 기계산업과 플랫폼 기반 IT 산업 투자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지 중앙정부 또한 단순 임가공 형태의 업종보다 고부가가치산업(하이테크, 반도체 등)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면서 베트남의 투자유치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3년 1~10월 누계 산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73.1%(188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8.3%(21억3000만 달러), 금융업 6.0%(15억4000만 달러), 도소매유통업 3.5%(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제조 분야의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제한적이며, 용수, 전력, 가스 등의 플랜트 프로젝트 또한 급감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도로 등 인프라 투자는 외국계 기업의 수주보다 현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15500	16120	15800	15660	17900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2023년 1~6월 베트남의 대외 직접투자 금액은 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하며, 글로벌 경기 위축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해 신규 프로젝트는 60개(1억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2% 급감했다. 다만, 증자 프로젝트는 16개(1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배 증가했다.

대외 직접투자 주요 업종으로는 유통업(1억4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억 달러), 농수산업, 금융업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의 주요 대외 직접투자 국가는 캐나다, 싱가포르, 라오스, 쿠바 등이 상위권이 위치했다.

2023년 6월 누계기준으로 베트남은 총 1,654개 대외 직접투자 프로젝트(221억 달러)를 진행했다. 그 중 141개 프로젝트(116억 7000만 달러)가 베트남 국영기업의 대외 프로젝트로 총 투자 규모의 52.8% 차지하면서 규모 면에서 국가사업 단위의 프로젝트가 대외 직접투자를 이끌었고, 민간기업은 소규모 투자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광산업(31.6%), 농수산업(15.6%)이 주요 투자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까지 베트남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라오스(24.4%), 캄보디아(13.3%), 베네수엘라(8.3%)로 집계됐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598	465	380	358	267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3년 10월 누계 기준으로 對베트남 한국 투자는 총 9,795개 프로젝트 투자액 841억 달러이다. 기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집중되었던 반면 전기/전자 글로벌 대기업의 진출이 북부로 집중되면서 북부지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9월 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인 SK그룹의 에코밴스(Ecovance) 하이테크 생분해성 프로젝트를 하이퐁에 투자하면서 한국기업의 최대 누계 투자액 지역은 하이퐁이 13.9%(117억 달러/197개 프로젝트)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제1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박닌성이 13.4%(112억 달러/963개 프로젝트)로 한국기업의 2위 투자 진출지역이며, 3위 동나이성 9.7%(81억 달러/487개 프로젝트), 4위 하노이 9.3%(79억 달러/2,550개 프로젝트), 5위 타이응우옌성 8.2%(69억 달러/135개 프로젝트)이 뒤를 이었다.

누계 투자금액 기준 지역별 투자는 북부 58.9%, 남부 34.2%, 중부 및 기타 6.9% 순으로 북부지역에 한국기업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3월까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투자액으로는 -70.4%, 프로젝트 수로는 -16.9%로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4월부터 투자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23년 1~10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액은 39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6%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신규 프로젝트수는 3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하며 큰폭으로 올랐으나 이에 비해 투자액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낮은 도소매업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업 투자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에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공급망 이전 및 신흥 유망 시장으로 여겨지는 인도의 성장,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부각되며 이로 인한 해외 투자자금 조달 문제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에 영향을 끼쳤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1,642	232	2,724,472	2,087	2,518,445
2022	1,620	303	3,668,948	1,971	2,836,861
2023	755	186	1,039,692	917	1,306,96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2023년 1~10월 기간 한국의 對베트남 총 투자액 기준 제조업에 약 90.2% 집중되어있다. 다음으로는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3.4%), 부동산업(1.2%), 물류운송업(1.1%), 전문과학기술업(1.1%), 전문기술서비스업(1%) 순이다. 2023년 3월까지 4,200만 달러(19건)에 불과했던 제조업 신규 투자액이 10월 기준 35억 4,133만 달러(107건)로 크게 증가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7	2	2,379	9	1,923
광업	4	0	24,417	108	67,936
제조업	1,040	98	1,443,795	1,326	1,379,24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	2	14,736	12	1,7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1	14,157	3	13,534
건설업	51	9	200,275	50	201,297
도매 및 소매업	245	52	352,087	276	345,249
운수 및 창고업	26	1	33,781	28	32,158
숙박 및 음식점업	16	4	26,274	17	26,484
정보통신업	99	25	26,274	108	69,738
금융 및 보험업	31	7	487,729	23	285,747
부동산업	25	5	68,374	32	62,1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	17	15,277	68	14,48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	5	3,788	10	3,79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1	194	1	194
교육 서비스업	4	1	1,671	4	1,6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100	1	1,8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2	9,120	8	9,3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	44	3	4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6	2	10,974	8	1,044
광업	3	1	28,239	107	67,115
제조업	1,032	134	2,546,388	1,277	1,793,39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4	3	332,460	20	343,85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1	41,033	2	41,033
건설업	59	10	143,134	61	143,570
도매 및 소매업	218	58	106,909	218	102,291
운수 및 창고업	22	9	13,598	19	10,166
숙박 및 음식점업	19	6	20,135	19	19,755
정보통신업	102	33	102,107	103	101,639
금융 및 보험업	22	6	256,359	24	149,767
부동산업	25	6	31,451	23	28,5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	23	13,420	58	13,2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	6	14,252	14	14,179
교육 서비스업	8	3	1,817	7	1,7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0	1,141	1	1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1	5,310	3	5,27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1	221	7	111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1,368	7	2,274
광업	1	1	190	52	26,090
제조업	432	63	715,853	538	989,7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	3	2,768	7	255
건설업	27	5	127,973	24	126,502
도매 및 소매업	117	49	45,647	125	36,300
운수 및 창고업	17	5	20,851	15	23,253
숙박 및 음식점업	24	16	3,716	24	3,069
정보통신업	57	21	34,845	52	34,582
금융 및 보험업	12	0	42,880	10	32,876
부동산업	14	6	8,544	15	8,3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8	18,093	23	6,89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3	781	9	743
교육 서비스업	2	2	361	5	2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2	10,922	5	10,9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	4,850	4	4,8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1	50	2	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롯데마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법인
업종	소매, 유통업
취급분야	도소매, 유통
모기업명	롯데쇼핑

○ 우리은행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우리금융지주

○ 삼일제약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법인
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삼일제약

○ 삼성SDS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법인
업종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시스템 등
취급분야	IT
모기업명	삼성SDS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태광비나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복 및 잡화
모기업명	태광실업(주)

○ 현대비나신조선소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선박
모기업명	현대미포조선(주)

○ 화승비나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신발
모기업명	화승그룹(주)

○ 포스코 베트남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냉연(FH, CR)
모기업명	포스코(주)

○ 효성베트남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 및 피혁
모기업명	효성(주)

○ LG 디스플레이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 디스플레이

○ 롯데건설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법인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취급분야	부동산 개발
모기업명	롯데건설

○ CJ베트남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식품, 유통, 물류 등
모기업명	CJ제일제당

○ 신한은행 베트남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법인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신한금융지주

○ 미래에셋증권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법인
업종	증권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미래에셋증권

○ GS건설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GS건설

<자료원 : KOTRA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법인은 주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베트남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1인 및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회사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돼 있지 않다. 기업운영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회사-자회사(현지법인)관계가 뚜렷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진출이 가장 많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율 또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특수 업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베트남 기업간 합작법인(JV) 설립 사례는 많지 않다.

지사

지사는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일종의 사무실이다. 실무상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립은 매우 제한적이며 금융기관, 항공사에 한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다.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통상 지방성의 산업무역국(DoIT)에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교육기관, 무역진흥업종 등 특수한 경우 담당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의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계약이 필요할 경우 모회사/본사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표사무소의 탈세 이슈, 베트남 정부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대표사무소의 인허가는 매우 까다로운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 3만 8,622건, US\$ 4,600억 달러이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과 베트남의 EVFTA, CPTPP, 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베트남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격리 정책으로 베트남 투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기간 현지 정부의 비친화적 기업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정부의 대응 방법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가 높아졌다. 베트남-미국, 베트남-중국 간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외교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위험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 제 1당 체제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이라 평가받고 있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p> <p>(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베트남 노동법은 최저임금은 월, 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만 공포하고 있다.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평균 6% 인상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최저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2023년 11월 기준('22년 7월부터 적용) 월 최저 임금은 325만동~468만동이다.</p> <p>(2) 외투 기업의 사업영역 제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사업영역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투자법 제9조2항은 베트남 정부는 a) 시장접근을 불허하는 산업 또는 업종 b) 조건부 시장의 산업 업종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3항은 이러한 제한 방식으로 a) 회사 내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 b) 투자형식 c) 투자활동 범위 d) 투자자의 능력 e) 그 외 기타 관할 관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p> <p>즉, 모든 시장 영역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사업 영역이 베트남 내 허용 가능한 부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p> <p>투자 제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법 제9조3항에 따른 방식으로 각 산업별, 업종별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지분비율이 제한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일반 포워딩, 창고업 등은 100% 투자가 허용된 분야이나, 트럭킹, 해운, 통관서비스 등은 투자제한이 있다.</p> <p>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되어 있으나 서비스 업종 특히 한국에서도 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대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개방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 대관 업무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된다.</p> <p>3) 분쟁해결</p> <p>내용없음</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한국과 달리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이사회를 필수로 두고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후 상장이 기본원칙이므로 운영 관련(특히 재무)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51%(특별결의의 경우 65%)를 기준으로 한다. 2015년 7월 1일 이전 구 기업법 하에서 의결정족수는 각 65%, 75%였으나 완화됐다.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서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다.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해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영을 전제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이다.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돼 있다. 다만 최고 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이며 정관 자본의 65% 이상 출석 및 출석한 정관 자본의 65%(일반결의) 또는 75%(특수결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권의 과반수 확보만으로는 경영권 확보 측면에서는 불안전하다. 다만 정관으로 의결권 조절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가 있고 그 절차가 쉽지 않다. 지분 양도 시 기존 사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매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존 사원 우선 인수권 제도가 있다. 기존 사원의 우선 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관에 기존 사원에 제시한 조건(양도금액 등)보다 좋은 조건으로 타에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

베트남 또한 개인사업자 제도가 존재하나 외국인 개인에게 채무 부담을 강제할 수 없어 실무적으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법무법인 율촌

전화번호	+84-28-3911-0225
주소	Unit 3, 4th Floor, M Plaza, 39 Le Duan, Dist. 1, HCMC
홈페이지	https://www.yulchon.com/ko/main/main.do
이메일	ksmin@yulch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명재 변호사(Lee Myeong Jae)

○ 법무법인 지평

전화번호	+84-90-906-6155
주소	16th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Dist. 3, HCMC
홈페이지	https://www.jipyong.com/kr/main/main.php
이메일	jtjung@jipyon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정정태 변호사(Jung Jung Tae)

○ 법무/회계법인 KNL

전화번호	+84-28-3930-0730
주소	2~3F, 63D Vo Van Tan,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홈페이지	http://www.theverylaw.com
이메일	yisujeong@thevery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수정 변호사(Lee, Soo-Jung), 이창열 회계사(Lee, Chang-Yeol)

○ 법무법인 로고스

전화번호	+84-28-3822-7161
주소	Unit 2002B, 20F,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홈페이지	http://lawlogos.com/
이메일	kskim@lawlogo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경섭 변호사(Kim Kyeong Sub)

○ 법무법인 JP

전화번호	+84-28-3910-0619
주소	Unit 2, 34F,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홈페이지	http://www.jplaws.com/
이메일	bhsjun@jplawv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전현우 변호사(Jun Hyun Woo)

○ 법무법인 세종

전화번호	+84-28-3827-4114
주소	9F,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홈페이지	https://www.shinkim.com/
이메일	yngil@shinkim.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길영민 변호사(Gil, Yeong-Min), 최영진 변호사(Choi Young-Jin)

○ 이정회계법인

전화번호	+84-28-3824-4770
주소	6F,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홈페이지	http://www.ejgy.co.kr/

이메일	jskim@e-jung.co.k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종신 회계사(Kim, Jong-Shin)

○ 법무법인 광장

전화번호	+84-28-3827-3886
주소	Unit 102, M Plaza, 39 Le Duan,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홈페이지	http://www.leeko.com/
이메일	joohee.cho@leeko.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주희 변호사(Cho Joo Hee)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베트남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 관리법을 제정해 외환을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환 관리의 주요 목적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계획 수립 시 국가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외자 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 수입을 보장하며 국내 수급 상황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및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수입원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수지 안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화 통제를 통해 외화 낭비를 막고 국내의 화폐 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외환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이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은행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 반입하는 미 달러 5000 USD 이상, 베트남 동 1,500만 VND 상당액 이상 외화, 귀금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 물건에 한해서만 재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외환 규제

베트남 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베트남 동화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판례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동화와 미 달러화의 병기도 과태료 대상이며, 달러화 표기 계약서는 계약 효력 자체까지 문제될 수 있다.

외환거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신용기관 및 외환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은 기관과의 거래
-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환 전신송금
- 거주자들의 대베트남 해외투자 수행을 위한 외환 형태로 자본 기여
- 거주자들의 수출입 계약 위탁을 위한 외환 전신송금
- 국내 및 해외 계약자들의 투자자들 또는 계약 총괄자의 비용 지불과 거래 지출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신송금 수령
- 보험 구매자들이 송신한 외환 형태의 전산 송금 수령
- 면세품 관련 비즈니스 및 국경, 세관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 수령
- 세관 보세창고와 국경의 세관 및 경찰서의 화폐, 입국/출국 비자 및 서비스 제공 요금 수령
- 재외공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 외환으로 지급된 외국인의 급여, 보너스 및 용돈 수령
- 비거주자들 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자금 전산 송신
- 베트남 국영 은행장의 허가를 받은 기타 필수적인 경우

외국 투자 기업은 다음의 경우 납세 증명을 비롯한 적법한 절차 이행 후 배당 송금할 수 있다.

- 기업 경영 결과 얻은 이윤
- 서비스 제공, 기술 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 투자 자본 및 청산잔액
- 기타 합법적 소유 자산 또는 자본

이와 같은 송금은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 중의 법인세를 사전에 완납해야 한다.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외국 투자자는 출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신규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에 의거하여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DICA(직접투자계좌, Direct Investment Accounts)를 통하지 않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거래일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DICA를 통하여 양수도대금을 지급해야한다. DICA 개설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대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더 이상 DICA를 거치지 않는다. 한편, 개인은 5,000달러 범위 내에서 세관에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나 5,000달러 이상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대외 결제은행 중앙은행이 지정한 여타 외국환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시행 예정인 베트남 신규 세법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역외차입에 대한 등록 및 신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역외차입에 대한 중앙은행 의무등록 규정을 신설하여 중장기 역외차입,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는 차입금 중 전체 대출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단기 차입,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는 없으나 최초 인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미상환 원리금이 남아있는 단기차입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역외차입의 변경은 기존 분기별 신고에서 월간 신고로 신고 기한을 단축하였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 1=VND 23,891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7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7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
비고	<p>베트남은 최저임금을 시간당이 아닌 월 기준으로 발표한다(상기 최저임금은 월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임).</p> <p>베트남은 5개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1 지역 468만 동, 2 지역 416만 동, 3 지역 364만 동, 4 지역 325만 동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성, 빈증성, 붕따우성 등 - 2지역: 다낭시, 껀터시, 냐짱시, 닌빈성, 하이증성, 흥옌성, 박닌성, 타이응웬성 등 - 3지역: 띠에닌성 일부, 벤째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 4지역: 1, 2, 3 지역 외 지역 				

〈자료원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근로계약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계약 효력일로부터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계약이다. 그 외에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규정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i) 국영기업의 사장으로 고용된 근로자, (ii) 고령근로자, (iii) 외국인근로자, (iv) 단위근로자 대표단체의 임원은 제외한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이익은 기존에 체결된 근로 계약 상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고,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 된다.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 2부를 작성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은 전자방식으로 체결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i)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및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집단이 근로자집단 소속의 근로자 1인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ii) 15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및 (iii) 가사사용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단,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단위로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보훈사회부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더욱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배치하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금·권리·이익의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매일 1시간씩 단축하여야 한다. 극히 과중한 업무 수행 여성 근로자는 경한 근무로 전환 또는 1일 1시간 단축(임금 전액 지급) 근무가 가능하다.

2) 초과 근무

1개월 3040시간, 1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초과 근로 시간은 규정된 1일 근로 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다. 주 단위 근무 시 평상시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합계가 1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일부 업무의 경우 특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휴식시간

일일 휴식, 교대 근무 중 휴식은 86시간 또는 그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 시간 중 적어도 30분의 유급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야간작업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적어도 45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 다음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통상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휴가

한 사업체에서 또는 한 사용자와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연 12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는데, 근로의 성격에 따라 14일 혹은 16일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사업체에서 또는 한 사용자와 계속 근로 시 5년마다 1일씩 연차 휴가가 추가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기거나 최대 3년분 연차휴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자는 2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3년분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때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실직으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정해지며, 휴가 대신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 해고 사유

(1) 근로자가 취업규칙 위반에 따라 징계조치로서 해고된 경우

(2)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i)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 약정이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때(취업규칙 등 기업 규정에 직무 완성 수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평가하여야 하며, 직무 완성 수준 평가기준은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의 의견을 받은 후 발행 가능)

(ii)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근로자가 취업 규칙 위반에 따라 징계 조치로서 해고된 때

(ii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연속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이상 연속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 (iv) 12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연속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연속 치료받을 경우
- (v)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관한 근로 계약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해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근로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경우 지속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vi) 천재지변, 화재, 위험한 질병, 외침,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른 생산·사업의 이전 또는 축소에 의하여 사용자가 모든 수단을 다하여 복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 (vii) 근로자가 사용자와 별도 합의 없이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 (viii) 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 (ix)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는 경우
- (x)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학력, 직업기능수준, 건강상태 및 근로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xi)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추방되는 경우
- (xii) 사용자의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 또는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분할로 인한 경영상 해고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도과 한 후 근무지 미복귀

○ 근로 계약의 일방적 해지해고 절차

1) 징계해고 절차

- (1)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행위 발견 시 해당 시점에 사용자는 노동규율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단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속 상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근로자가 15세 미만의 경우 근로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징계회의에 관하여 통보.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자가 발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징계조치 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 사용자는 징계회의 개최 최소 5영업일 전 징계회의에 대하여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근로자, 변호사(근로자가 직접 변호하지 않는 경우), 15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 사용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징계회의 구성원은 징계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회의 구성원 중에 참석 불가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하여 징계회의의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결정한다.
 - 사용자는 통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징계회의의 진행. 징계회의의 구성원 중 참석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징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구성원의 참석 없이 징계회의의 개최
- (3) 징계회의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징계회의의 종료 전 참석한 구성원이 동의해야 한다. 징계회의의 보고서에는 참석한 구성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참석한 구성원의 일부가 징계회의의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4) 사용자 측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근로자의 징계조치 결정권을 가진다.
- (5) 징계조치 결정은 징계조치 시효 기한 만료일 또는 시효기간이 남았으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장된 60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함. 징계조치 결정은 각 징계회의의 참석 구성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1) 유의사항

- (1) 사용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은 유관기관,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 노동관서에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사용자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3)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와 근로자는 노동쟁의 해결에 관해 규정된 절차와 수순에 따른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최소 45일 전, (ii)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최소 30일 전, (iii)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및 위 해고사유의 (2)(ii)의 경우 최소 3영업일 전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해고사유의 (2)(iv) 및 (vi)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5) 사용자의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 또는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분할로 인한 경영상 해고 절차

- 사용자의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
 - (i) 노동사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필요, 새로운 직무 발생 시 계속된 고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시행
 - (ii) 사전에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과 논의하여야 하며, 근로자 해고 30일 전에 상급 국가노동관서 및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 필요

-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분할로 인한 경영상 해고
- 기업 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한 자는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o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i) 근로자가 질병, 노동재해, 직업병 등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질병, 산업재해 혹은 직업병이 있어서 권 있는 진료·치료기관의 지정에 따라 치료·간병 받는 경우. 단, 해고사유 (2)(ii)의 경우는 제외
- (ii) 근로자가 연차휴가 중이거나 개인휴가 또는 그 밖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중인 경우근로자가 연차 휴가 중이거나 사적인 휴가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중인 때
- (iii)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출산휴가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퇴직금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2분의 1로 한다(2009년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 및 10인 이하 사업장). 다만, 사회보험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거나 근로자가 자 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5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의 1/2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 및 10인 이하 사업장) 2009년 이후로 실업보험제도 적용으로 인해 실업 보험납부자(12개월)에 한 해서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에 2009년 이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사용자가 실업보험금을 빠짐없이 납부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베트남의 사회보험은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질병 및 출산급여, 산업재해 급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질병, 임신, 출산, 퇴직,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 의무 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외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건강보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사회보험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질병 및 출산급여와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있다. 질병 및 출 산급여의 보험료율은 사용자만 3%를 부담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 3%, 근로자 1.5%이다.

고용보험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매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의 1/2을 지급해야 한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실업보험 납부자에 한 해서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이며 이외에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사회보험의 세부 내역으로 규정돼 있으며 해당 항목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사용자 0.5%이며, 근로자 부담은 없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만 60세 3개월에 달한 남성 근로자와 만 55세 4개월에 달한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해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베트남의 연금은 사회보험의 세부항목인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사용자 14%, 근로자 8%이다.

2022년 부터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사회보험료 납부 만기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년씩 증가해 3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만약 사회보험료를 만기까지 납부하였다면 기존임금의 75%까지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저 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납부했던 보험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 시 일시에 반환받을 수도 있고 본인부담으로 잔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기간만큼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의무적 사회보험

1) 가입 대상

가입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허가서를 보유한 자이다. 단,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자와 외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된다.

2) 납부 수준

외국인 근로자 총 10.5%, 회사 총 21.5%

베트남은 의무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최고상한제를 두고 있다. 사회보험의 최고상한기준금액은 2020년 기준 2,980만동(약 1,284 USD)이므로, 급여가 2,980만동을 초과할 경우 급여를 2,980만동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다.

3) 납부 방법

회사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서 전 항의 외국인 근로자 부담 부분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액에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사회보험기관에 납부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사회보험기관은 노동기관과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적당하고 판단되는 납부 기간을 결정한다.

4) 보장 내용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혜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만기까지 보험료를 완납하면 기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고, 본인 부담으로 잔여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 종료 또는 노동허가 기간 만료가 예상되거나 재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는 근로 계약 또는 노동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전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일시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5) 한베사회보험협정

2021년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한베사회 보험협정을 체결하였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4월 24일 한베 보험협정 발효를 위한 정부 결의안을 발행하였는데, 이로써 협정 발효를 위한 베트남 측 절차가 완료되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되었다.

노동조합 지원금

일종의 사회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노동조합지원금은 사용자만 2%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각 개별기업 내 단위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사회보험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급여의 2%를 노동조합지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단위 노동조합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상급 노동조합기구에 납부를 해야 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1)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서는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2) 법인세율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이나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그간 글로벌 기업에 5~10% 수준까지 법인세를 낮추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된다(기본세율은 28~50%). 투자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특혜세율(10%, 15%, 17% 중 하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연매출 30억 동(12만9000달러)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은 15%, 연매출 500억 동(215만 달러) 미만 근로자 100명 미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금년 베트남 총리는 외국인투자 급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글로벌최저법인세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법인세제도가 시행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대기간동안 적용 받는 실제 세율은 평균 12.3% 수준이어서 사실상 법인세 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현행 법인세법은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 하자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을 것
- 2000만 동 이상의 지급 건의 경우 은행 송금 관련 서류
- 법에 나열된 공제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투자 기업은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한다. 2020년 10월 19에 발표된 Decree 126/2020/Nd-CP에서는 기존 4분기 80% 기준이 3분기 75%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적용을 유예하였다. 3분기 법인세 선납할 때 (기한: 10월 30일), 연말에 최종 결정될 법인세의 7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법인세의 7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3분기 납부기한부터 기산하여 가산이자 부과된다.

한편, 회계 연도가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나,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이월 결손금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월 결손금의 공제가 5년간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세무관서에 사용 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6) 지분 양도 세금

기업의 지분권자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20%를 양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 소득은 양도 가액(매각 관련 비용 제외 후)에서 최초 투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외법인에 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인 경우 매각으로 인한 이득의 20%를 납부한다.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2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 목적상 영구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5%에서 35%까지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간혹 베트남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 시 현지 수당만 신고하고 대한민국 내 수입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 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역년 중 외국인이 베트남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나 베트남 체류 첫날로부터 연속 12개월 내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의 최초 과세기간은 베트남 최초 체류일로부터 12개월로 결정되며, 2년차의 과세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 소득은 고용 계약서, 소득 영수증 또는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계산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평균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월(수령일 익월 20일까지), 혹은 분기(분기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연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개인소득세 연기준 납부액을 익년도 90일 이내에 최종 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마감은 2021년분부터는 매년 4월 말까지로 변경된다.

○ 과세 표준 구간 및 적용 세율

- 구간 1(~월 소득 500만 동): 세율 5%
- 구간 2(~월 소득 1000만 동): 세율 10%
- 구간 3(~월 소득 1800만 동): 세율 15%
- 구간 4(~월 소득 3200만 동): 세율 20%
- 구간 5(~월 소득 5200만 동): 세율 25%
- 구간 6(~월 소득 8000만 동): 세율 30%
- 구간 7(월 소득 8000만 동 초과): 세율 35%

또한 베트남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개인소득세가 면제, 감면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시작되기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야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1)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제조 활동, 무역, 용역 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품으로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금 생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에서 제조할 수

없는 기계 장치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베트남에서 생산 가능 품목 확인: Circular No.01/2018/TT-BKHDT)

2)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부가가치세 세율 10% 대상에 대하여, 1) 통신, 금융/보험/증권 관련, 부동산, 금속, 화학, 경유 등을 제외한 품목 2) special sales tax(특소세) 대상 품목 3) 정보기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제외하고는 8%의 수정된 부가가치세율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 0%: 수출품 및 임가공 수출, IT Software의 수출 등
- 5%: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 (※ 743 / BTC-TCHQ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의료용 사용 목적 인증 후 5% 적용)
- 10%: 표준 세율로 위의 세율 및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활동

3) 신고 및 납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말 익월 30일까지이다.

4) 환급

부가세 신고 주기에 따라 당월 혹은 당분기에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익월 혹은 익분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환급 신청은 1년 단위(만 12개월)로 가능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억 VND를 초과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 등) 매월 혹은 분기마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담배, 주류, 자동차, 에어컨 등 재화뿐만 아니라 마사지, 카지노, 골프 등 용역 활동에 대해서도 부가된다. 주요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다.

- 시가/담배: 75%
- 증류주/와인(알코올 함유량 20% 미만): 35%
- 맥주: 65%
- 석유: 7~10%
- 24인승 미만 자동차: 10~150%
-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20%
- 에어컨(90,000BTU 이하): 10%
- 카지노, 슬롯머신: 35%
- 골프: 20%

이전가격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기존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해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는 개발도상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나라에 비교해 소규모 거래도 문서화를 강제하는 등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정을 준용해 아래 3가지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그룹 본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
-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각 자회사가 이전가격 거래 시 관련 정책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행보고서
-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전 세계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 이 보고서는 매출액, 이익, 세금납부액, 종업원 수,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형태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제출 대상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제출 대상

2)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기 및 제출

납세자는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통상 3월 말)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작성해야 할 이전가격 서식 4개가 추가되었으며,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위의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작성을 선행해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과세당국의 요청 시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 신고서 01(특수관계자거래 기본정보)
- 신고서 02(개별기업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3(통합기업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4(국가별보고서)

3)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계 법령의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로 본다.

-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을 소유한 최대 주주로 다른 기업의 총 주식의 최소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방 기업이 상대방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제공해 대출금액이 피대출 기업 지분의 최소 25% 이상을 차지하고 피대출 기업의 중장기 대출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특수관계자의 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각 금융 거래 포함)
- 일방 기업의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Control board, inspection committee) 위원 중 50% 이상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하며, 상대방 기업의 재무정책 또는 사업 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일방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
- 각 기업의 재무정책 또는 사업 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동일한 제3자가 지명
- 양 기업은 부부, 친아버지, 양부, 생모, 양모, 친자식, 양자, 친형제, 친남매, 처남, 올케, 조부모, 친손자, 친손녀,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고모, 삼촌, 숙모, 이모, 친조카, 외조카 간의 가족관계를 가진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인력, 재무 및 사업 관련 업무를 관리 또는 통제
- 양 기업은 본사와 고정사업장의 관계를 가지거나 동일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고정사업장임
- 하나 혹은 다수기업에 한 명의 개인이 자본을 출자해 감독을 받거나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생산영업)활동에 대해 실제로 경영 및 통제하는 기타 각 경우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하여 규율한 2005년 제정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기본 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개정된 바 있으며, 2022년 6월 16일 개정안이 국회의원 98.5%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형법(50/2005/QH11 등)과 같은 기타 국회에서 제정된 관련법률, 시행령(103/2006/N-CP 등)과 같은 정부가 제정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01/2007/BKHCHN 등)과 같은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규칙,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과 국립 저작권청(NCO: National Copyright Office)이 제정한 내부 규정에 의해 제정된 내부 규정 등이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제정한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현재 베트남의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는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Law No. 5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on Intellectual Property)과 2009년의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률(Law No. 36/2009/QH12 of June 19, 2009,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2010)) 및 2019년 일부 개정법(42/2019/QH14) 등이 적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관련법(IP Law 2022)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보다 명료히 하였다.

둘째, 저작권자 및 공동 저작권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 및 공동저작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인격권 및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저작권자 간에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발생의 여지를 줄였다.

셋째,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개정법은 저작인격권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리 및 저작물 양수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였다. 또한 복제 및 배포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료히 하였다.

넷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개정법은 국기, 국장, 국가와 관련된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국가의 이익, 공익,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 휘장, 국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단체와 개인은 국기, 휘장, 국가의 보급과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제7조)

다섯째,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내용을 명료히 하였다. 복제란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까지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였다.

여섯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단체, 영화제작자, 발행인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명명된 개인 및 조직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로 간주한다고 명명하였다.

일곱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예: 전자 상거래 플랫폼 Shopee, Lazada, Tiki 등)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배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 중개업자가 책임을 질 것으로 정하여 있어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였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기관 또는 개인이 가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을 포함하고, 저작권 관련권(copyright-related) 대상은 공연, 음반, 영상 녹화물, 방송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며, 재배식물 종자권 대상은 재배식물 종자 및 수확물질이다(지식재산권법 제3, 4조).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특허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 및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되며, 10년을 주기로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신고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기본적으로 지재권은 지재권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 특허 등의 지재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상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자,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른 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재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을 베트남에서 출원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에서 지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사후 구제 절차가 있으며,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정적 구제는 경찰,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수단은 행정적 구제로 (1) 다른 절차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2) 모조품 몰수, 폐기 등 직접적인 구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 행정 조사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확보와 관련 정보 확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보상 및 피해에 대한 추가 구제가 필요한 경우 침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 때 민사소송 과정에서 행정 조사결과 등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재권 침해가 소비자 또는 사회 일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제재 수단의 강제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재권 침해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거나 침해에 이용된 물품 등을 압류하고 관련자 개인과 침해 장소 등을 수색하는 등의 예방적인 행정 조치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적 조치는 관련 기관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침해자가 모조품 유통 등에 일부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기관(VIPRI)으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서 취득한 이후, 행정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여 개시된다.

이 밖에도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베트남 국외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조품을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관에 모조품의 수출입 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 통제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 담당자는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수입 시, 통관절차를 임시 정지하고 지재권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관절차 임시정지는 지재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는 추후 민사 소송 등에 제출할 증빙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경고나 벌금, 모조품 파기 등 행정 처분 실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통관절차 임시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지재권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면(등록증), (2) 예상되는 모조품의 형태, 예상 수입회사(동 부분을 자세히 기재할수록 세관 공무원이 모조품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음) 등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 실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통지를 세관으로부터 받고 통관절차 임시중지를 세관에 요청 시, 나중에 해당 제품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보증금도 같이 공탁해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통관절차 임시중지 대상 상품 가치의 약 20%이며,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2,000만 베트남VND(약 874 달러)을 공탁하여야 한다.